

제424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23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2)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6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6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6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7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7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7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76.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 

### 상정된 안건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	5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	5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	5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	5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	5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	5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	5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	5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	5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	5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	5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	5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	5
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	5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	5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	6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	6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	6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	6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	6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	6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	6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	6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	6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	6
26.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	6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	6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	6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	6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	6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	6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	6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	6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	6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	6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	6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	6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	6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	6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	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	6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	6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	6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	6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	6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	6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	6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	6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	6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	6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	6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	6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	6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	6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	7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	7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	7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	7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	7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	7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2) .....	7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	7
6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	7
6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	7

6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	7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	7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	7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	7
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	7
7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	7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	7
7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	7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	7
7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	7
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	7
76.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	7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26.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2)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6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6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6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7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7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7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76. 합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6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62항까지, 먼저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중단 이하의 지난 25년 2월 18일에 있었던 소위 심사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헌법 개정과 연계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을 구분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개정사항들은 조속히 입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당시 국방부차관께서는 다수의 개정안 중 개정안에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안이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인지, 국방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6개 조문의 개정과 3개 조문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자료에서는 국방부가 헌법과 연계되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내지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을 추후 논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건대 오늘은 법안심사의 효율성과 처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부 제시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제시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6개 조문과 3개 조문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해 볼까요, 아니면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조문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먼저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와 관련한 조문 개정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관련된 겁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계엄 선포 등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은 법률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규정입니다.

관련하여 제4조는 계엄 선포의 통고입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차관입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기됐던 60여 건의 계엄법 중에서 헌법과 상치돼서 현행의 법률 개정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제외하고 현 법률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저희 국방부가 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셔서 2개 조항을 했는데 위원장님 승인하시면 저희가 제시했던 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정도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앞에서 얘기했던 2조의 '계엄 종류 및 선포'하고 4조의 통고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도 검토했을 때 국무회의하고 해서 국회 통고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

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회의록을 통고 시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내용을 2조와 4조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안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관련된 것인데 기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보면 거주·이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헌법에 규정돼 있는 조항에 보면 헌법의 특별조치에서도 거주·이전에 대한 것들은 통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9조에서는 그렇게 삭제 안으로 했습니다.

11조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고 동의하는 것에 추가해서 국회의원하고, 사실은 의결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속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같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 12조에 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 연기에 관련된 것인데 현행에 보면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재판권을 1개월 범위 내에서 군사법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학계라든지 헌법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 시에, 계엄이 해제됐을 때는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맞춰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에 좀 빠졌는데 11조의3을 보면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명기해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보고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구체화돼 있지 않은데 계엄 간에 시행이 됐던 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그다음에 특별조치 사항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된 조사서 등 관련 증빙 자료들을 계엄 해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11조의3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조에는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시에 국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전체 하기는 어려우니까 국회가 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 시에, 여기서 구금·체포된 의원들도 본회의 개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개정안에 반영시켰습니다.

13조의2에 보면 국회 출입과 관련돼서 계엄 시에는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과, 단 어떤 상황에 맞춰서 군경이 출입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를 드렸고.

14조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와 관련된 행위를 한 군경에 대한 처벌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현행 법규 내에서, 60여 건의 계엄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것 중에 바로 반영해서 계엄법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 정도로 저희가 판단해서 개정안을 보

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혹시 추가하실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일단 국방부에서 제시한 안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보니까 아주 검토를 잘했네요. 왜냐하면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그때 사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해제 그결 못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그 항에 있었는데. 사전 그것은 헌법과 충돌이 되고 사후 72시간 내 이런 걸 못 하면 한다든가 통보도 몇 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간제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저희가 국방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서 이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72시간 내자동 해제 조항은……

○**김병주 위원** 헌법과 충돌되나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이게 선포뿐만 아니라 해제도 국무회의 심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72시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자동 해제를 상당히 주장을 했으나 법률관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희 당의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해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한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조금 이따 떠나야 돼서 제 의견 먼저 잠깐 얘기하면, 일단 국방부 전체 의견은 동의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 것은 아니고 헌법과 충돌이 안 된다면 일단 빨리 이 정도라도 통과를 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게 좋겠다,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렇네요.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8페이지에 11조의3 보면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의 증명자료’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보고하느냐? 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

는 의무조항은 좋은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이게 사후 보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상임위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한다고 의결을 하면 그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법률로 규정해서 몇 시간 내에, 며칠 내에 보고한다 이런 것보다는……

○**허영 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라든지 ‘즉시’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는 법률조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하여야 된다’가 기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상임위 같은 것들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논의할 때 기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었는데 만약에 논의해 주시면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기한과 관련돼서?

○**김병주 위원** 여기 통고도 있잖아요, ‘통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실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즉시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이게 얼마인지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좀 시간은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논의해서. 그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다르니까, 꼭 시간을 몇 시간 이내 통고한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계엄을 선포하면 통고는 2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바로 한다, 즉시,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네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게 시간으로 선정하면 사실 그때 보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상 보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즉시라는 개념으로 끝남과 동시에 준비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즉시’라는 표현이 좋습니까,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즉시’가 좀 강한 표현이지요.

○**허영 위원** ‘즉시’가 더 강한 표현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예.

○**허영 위원** ‘즉시’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 법안이 많이 있어요, ‘즉시’가 들어가 있는 법안이. ‘지체 없이’도 있지만.

○**허영 위원**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병력을 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

해하기 위한 목적,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특권 부분에서 어떤 경우든 계엄 관련 부분은 조치가 신설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회 출석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포·구금된 현행법인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회의 참석 조치는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국방부와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국회 회의에 참석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와 관련된 의결을 할 때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내용들을 그저께 국방부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다 했는데. 우선 지금 국방부가 그동안 많은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 지금 6쪽에 ‘국무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인데 즉시라는 말은 불필요한 수식어 같아요. 그냥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 그러면 되고, 이 회의록이 제출돼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주·이전에 관련돼서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8쪽에 가서 11조의3에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쭉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실제로 지휘하거나 이거는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사항은 이건 실제로 삼권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국방부에도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 외에 특별조치 이것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라항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같이 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특별조치 사항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넣으라고 하는 건 이것도 법에 명시하기에는 실제로 조항에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항은 제외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는 없지만 실제로 국회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국회에 출입하는 인원들이 앞으로 군인들과 관련돼서 못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여기 10쪽에 보시면 ‘계엄 시행 중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국회를 지키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박선원 위원** 아니요, 전혀 문제없지요.

○**한기호 위원** 문제없다고 하면 뭐……

○**박선원 위원** 아니, 그동안 계엄군이 국회를 지킨 경우가 언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기호 위원**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박선원 위원도 국정원에서 근무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테러 작전하고 이것을 군이 수행을 합니다.

○**박선원 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제 다 빼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국가보안시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외곽의 경찰들이나 하면 되지.

○**한기호 위원** 아니, 얘기할 때는 좀 기다려 봐요, 방해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매너가 없어요. 이제 알 만도 한데.

○**박선원 위원** 죄송합니다.

○**한기호 위원** 말할 때 그렇게 방해하면 안 되지요.

○**박선원 위원** 예.

○**한기호 위원** 국회의원 돼서 한 1년쯤 됐으면 이제는 좀 알 만한 때 안 됐어요?

○**박선원 위원** 예, 됐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테러 시설로 지정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대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는 계엄 상황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인신의 구속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 전시·계엄 때, 전쟁이 나서, 그래도 괜찮냐?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도 이게 전시가 됐을 때 괜찮냐? 그러면 경찰이 여기 안 들어와요, 경찰도 계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인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국회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이분들만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전기총을 가지고 있나? 내가 알기로는…… 총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없지?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을 상정해 보면.

그래서 이 조항을 민주당이 좋다 그러면 넣으셔도 좋아요. 저는 특별히 이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나서 게릴라가 침투해서 경내에서 총을 쏘고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할 때 그럴 때도 안 들어와도 되는가, 그러면 그 판단을 오직 의장만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충무계획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가보안목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국방부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경내에 있는 인원들이 무장이 안 돼 있거든. 하여튼 위원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국회에 어떤 비상사태, 예를 들어서 북한 군이 들어왔다, 아니면 테러 단체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만약에 테러단체나 북한 군에 의해서 납치됐을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도 쭉 검토하면서, 국방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기호 위원께서 2조 5항의 즉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즉시를 뺄 필요가 있다 했는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록이 작성되고 부기하

고 하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즉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는 절차하고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더라도 실제 4조에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9조인데 9조에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부분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들어갔었을까? 지금 헌법의 취지에 맞춰서 빼는 걸로 했는데 계엄법을 만들 당시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하는 걸로 했는데 검토를 하면서 전시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검토를 다시 하다 보면 이게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시·사태 시를 고려했을 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넣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검토하시면서 보신 게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홍창식** 법무관리관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헌법에서 거주·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법 규정 자체에 대해서 위헌설과 합헌설이 있습니다. 합헌설은 어차피 헌법 37조에 의해서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법에 하면 가능하다라는 취지인데 한편 이 법률로 근거는 두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주체가 국회가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주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특별조치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야간통행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법이라든지 다른 치안에 관한 법률로써 이것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법무관리관께서 얘기한 취지는 그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조 문제인데요. 12조에 보면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논리로 전시가 됐을 때 아니면 사변이나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민간 법원에서의 어떤 조건 자체들이 안 일어날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게 좀 검토가, 저희들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그 취지가 헌법에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하고 크게 좀 상충되는 영역이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법 취지에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1개월 정도 연장시키는 그런 것하고 그냥 일반법원으로 넘겨서 일반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냥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것도 삭제하는 것은 계엄하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최종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영역을 저희가 고민은 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의2, 한기호 위원님께서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 출입 금지와 관

련되는 부분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놓고 봤을 때 군의 출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견에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시라든가 사변의 사태 시에 국회의원의 보호나 국회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같이 고민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면 국회의장의 동의하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국회의장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전시 사태를 상정한 또 대태러의 상황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까지를 고려한 법을 개정을 해야만 나중에 충돌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국회 측하고 논의할 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국회에 정말 위해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던 안은 지금 문안을 ‘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놓지만 조건 안에서 ‘단, 선 조치 후 승인’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정말 적에 의해서 국회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거나 할 때는 선 조치하고 후 국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하나 어딘가는 명기를 해 놔야 정말 우발 상황에서 국회의장께서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최후의 상황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 의견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정해 가면서, 이것을 만드는 취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견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국회의장이 동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까지로 현재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 전체를 다 보시면 문제가 우리 국회가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국회만 생각을 한 거야.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 계엄법이 같이 적용된다고 봐야 되고,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콕 찍어서 국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것이지 일반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에 대한 요청과 허가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국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 외에, 예를 들어 종합청사, 한국은행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는 시설장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다른 기관들도 국가보안목표 가급이 다 있거든. 그래서 일반 비상사태로 보자 말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전시가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요청하고 허가한다고 하는 이 항은 요청했을 때 요청받은 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에다가 요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거부할 수 있지요, 요청한 것은 응할 의무가 없으니까. 허가한다, 안 오겠다고 그러면 허가하고 아니고 할 게 없지.

그래서 요청과 허가라는 자체가 임의의 조항입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

에 대해 수명하는 쪽에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4항에 ‘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경찰이나 군인들이 혹시나 내가 괜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필요가 뭐 있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국회 안은 완전한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냐. 이것은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성도 국방부가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전시가 됐을 때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국회만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의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자는 측면이지 어떤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는 안 돼요. 현명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국방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하고 훈령, 상식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3조 2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떠냐 저런 상황은 어떠냐, 다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계엄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특작부대가 국회를 침탈하는데 그 것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정보기관, 검찰, 군이 제일 잘 알지요. 그때 협력을 요청하고 특작부대 와서 대테러작전 하겠다는데…… 그것 계엄법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게 맞다.

그리고 타 기관하고 왜 비교를 하십니까? 계엄법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행정 그리고 사법에서 극도로 교란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군이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도 입법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 행정기관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선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히 전시 계엄일 경우에는 당연히 국회는 이미 소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의 비상계엄, 이번과 같은 사례에 제한하자 하는 것이지 전시에 전 국가가 비상체계에 들어가 있고 국회도 당연히 소산되어 있고 전시지휘부까지 소산되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다 법으로 만들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엄법의 새로운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국방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잘 작성됐다고 보고요.

다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칙조항 같은 경우, 특히 14조 3항 말고 4항 같은 경우에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 그러니까 13조 2항에 연결되어서 이런 것인데 이 부분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전 승인 아니면 선 조치 후 동의 이런 것이 없어도, 그러한 부분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4항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허영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 허영 위원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통합방위법 제21조에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방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제외하고 또 국회 포함해 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의 경호·방위 업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법에 그것이 똑같이 적용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시상황이라고 하면 국회의장이 전시상황에서 국회를 방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군 병력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불법적이고 위헌적으로 벌어지는 계엄 상황에 아주 중요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들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이 조항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은 즉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라고 하는 조항은 살렸으면 좋겠고.

또한 11조의3에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이것도 당연히 보고되어야 되지요. 계엄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되는데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사항들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엄의 각종 사항들을 국회가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시비가 있을 때의 문제점, 어떻게 위법하고 위헌적인 사항들을 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즉시 기록하여야 된다는 것은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3일이 지난 후에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문을 보내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사후 왜곡·조작 이런 문제 때문에 즉시라는 것들을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방부 제시안을 단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시적인 논쟁을 가지고, 물론 대통령을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도 있고 그다음에 꼭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에 출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62개의 계엄법 개정안 중에 국방부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협의를 했고 저희 방과도 협의를 했고 해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 제시안과 그리고 수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

○ 한기호 위원 아니,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엄만 염두에 둬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사변, 위중한 국가위기사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기에는 전시다 사변이다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시나 사변이 됐을 때도 계엄령이 반드시 발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

령에 대한 것을 다 보고하라는 것은 통수권자에 대해서 다 보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것을 다 보고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에 대한 보고를 하라면 되지 대통령을 명시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정이 아니고요 해제 이후입니다. 해제 이후이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 대통령의 어찌 됐든……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 전시나 사변 때도 똑같지요, 언젠가 해제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라항에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같이 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저도 동의 안 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입장을 밝힐게요.

그다음에 제13조의2에, 지금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 조항들은 실제로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또 여기에 경내에 출입하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0만 원 이렇게 간다고 그려는 것 이것도 맞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가.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는 게 실제로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박선원 위원님이 전쟁이 나면 군인이 먼저 알고 다 안 다음에 이루어진다는데 요즘 전쟁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때릴 때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게릴라가 국회 경내로 뛰어들어 왔어, 쫓아 들어왔어. 쫓아 못 들어오겠네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제를 두고 했을 때는 융통성을 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쫓아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안 쫓아 들어오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 저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하시고요,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하실 거예요?

○박선원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하시고.

이게 원만한 합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접근 방법이 좀 미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합의에 의한 법률 개정·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표결에 있어서 3 대 3 딱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미시적인 것 하나 ‘즉시’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 하나, 이런 것 하나 다 하면 결국은 국방위에서 통과될 법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까지 법이 많이 통과됐는데 없다고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렇게 치면 없지요.

그래서 좀 대의적·거시적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위원** 전시나 비상사태에 군이 각종 시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출동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계엄령에 한해서는 사실상 국회가 해제요구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허용해 버리면 사실상은 계엄 해제 요건 자체가 완전히 출동한 병력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관이 제안한 것처럼 전시에 선출입되어서 보호조치, 방호조치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넣든지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껏 논의한 부분들이 다 무산된다고 한다면 이것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이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넣는 것이 그것이 무슨 위법한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벌조항을 넣어야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주장하시는 것들이 다 일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기호 위원이나 저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전시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놓고 봤을 때 지금 법에 이러한 위반 시에 징역이나 금고, 벌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될 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국회를, 국민을 피해를 입히게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법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예요. 다른 것 없어요.

똑같이 지금 국회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부분을 해제 의결하고 하는 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절차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3조의2가 그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지금 ‘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 누가, 어떤 지휘관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군사적 조치를 하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받은들 병사들이 들어가겠어요? 이걸 왜 법으로 만드냐 하는 부분이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이 계엄법을 우리가 왜 개정을 합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유를 걸어 가지고 병력을 동원해서 불법 해서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계엄법에 그러한 일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막아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작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담 넘어서는 괜찮다 그려세요, 차라리. 출입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담 넘어왔으니까 여기 출입이냐 그런 건 다 괜찮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디테일하게 법에 다 넣는 것 아니잖아요.

법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만 규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특작부대가 들어오든 그러면 비상사태가 전국 계엄 부분으로 발령되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테러부대가 왔다 그러

면 수방사가 투입돼서 이걸 막는다, 특전사가 투입돼서 여의도가 아니라 종로에서 지금 막고 있다 그러면 부대가 다 외곽 경비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을 다 상황을 빼고 계엄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일반적으로 평시에 무슨 유사 사태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시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대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조항 자체를 무실화시키는 그런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번 계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국회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지 그 법이 아무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고 법이 관철·유지되고 있는데 개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3 내란에 기초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전시가 어떻게 무슨 북한이 침입했는데 그것 어떻게 내버려둘 거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대처해야지.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과 권위, 입법부의 보호, 입법부가 다시 침탈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3조 2항의 입법 취지가 결국 국회의원의 안전에 대한 최대 보장 또 표결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침해 못하게 하는 상황을 가정한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러단체다, 북한군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가정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가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안전이나 표결권 방해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둔다든지 이런 조항을 세게 때리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 입법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6·25전쟁 때 계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6·25전쟁도 계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 따로 있고 계엄 따로 있다고 보시는데 박선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이 같이 발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계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상정,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박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얘기하세요.

○**박선원 위원** 제 이름 말씀드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전쟁 상황 따로 그다음에 이것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충무계획이 유효하다고 계엄령이 발령되고 전시가 돼서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위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계엄령이.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자는 거지요. 이걸 실제 국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국회의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 줘

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마치 누구는 계엄법 개정하는 것 반대한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융통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구태여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제외를 해서 융통성을 줘야지 나중에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지 반대한다고 누가 했습니까? 지금 최초 발언할 때도 전부 다, 임종득 위원이나 저나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계엄법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해서 수고 많이 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누가 반대해요, 반대하기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통합방위법에 보면 별칙 조항이 있습니다. 제16조 1항 이게 뭐냐면 통제구역의 출입금지 조항입니다. 출입금지 제한 또 퇴거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행정기관은 통합방위법상의 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데 입법기관은 이런 시에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건 또 무슨 형평성입니까? 당연히 넣어야지요. 그것도 계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계엄 상황 속에서의 보호 조치인데, 전시에는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하겠습니까? 왜 입법기관은 처벌 조항을 없애야 되지요? 그게 왜 과잉 입법이지요? 행정기관은 다 출입금지 조항들 어기면 이렇게 처벌받는데.

###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6·25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6·25 일어나고 북한이 남침하고 언제 계엄 선포됐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입법조사관님, 언제 선포됐어요? 한 달쯤 뒤에 선포됐지요? 그리고 이번 현재 결정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해서 부산 정치파동 일으켰다, 그때부터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치에 동원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양 모 준장이 거의 안내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공소장에 그분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게 하겠다 하는 거고.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군 국방부 협력관 퇴거했잖아요. 그것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러나 퇴거라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도 퇴거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협력관이 나와 있는 것을 오히려 앞세워서 국회에 침투하는 마치 첨병처럼 활용하려는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자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위에 상식이 있는 거예요. 전시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전쟁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까지 다 법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시다가 또 갑자기 전면전 말고 테러리스트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테러리스트가 국회 밖에서부터 들어오면 같이 작전이 연동돼서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국회사무처하고 국회의장, 경찰 다 합동작전해서 연락해서 막아야 되겠다 승인하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시에도 당연히 국회의장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서 국회의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어느 순간에 의장 대신 부의장이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자연인 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으로서의 국회의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 계엄사령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국회의장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허영 위원이나 박선원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기호 위원님이나 윤상현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캡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살린다면 지금 실제 전시나 사변 상태에서 우발 상황들이 생겼을 때 효율적인 작전을 하지 못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선 조치 후 보고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만약에 승인하시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다 동의하고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구가 그것을 다 합의하기 어렵다면 저희들이 이 문구를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행동하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하나 여기에 추가하는 수정 내용을 저희가 가서……

○허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테러방지법에도 이미 테러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한 법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선 조치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실 다른 법에 테러가 됐든 전시가 됐든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방위법이나 이런 데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구성에 국회는 빠져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군사작전 시행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협의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 회의체에, 협의체에 국회는 아예 빠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테러 상황이 발생했거나 그러면 입법·사법·행정 할 것 없이 다 구성이 되잖아요, 모든 법상에. 그러면 거기서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 의견도 있을 거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계엄법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승인을 안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 명시가 돼 있어도 계엄법을 제외하고는 국회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실제로 군사적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통합방위법에서 보장하는 군사적 조치와 계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국회 출입에 대한 제한 법이 만약에 충돌되는 영역이 생겼을 때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법에 있다고 해서 계엄법에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계엄법에 규정된 것이 다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통합방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군사작전의 허용성과 계엄법에서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 이 제한성이 상호 충돌되는 영역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못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모호한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 조치 후 승인

이라는 개념을 넣는 것도 저희들은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기본적으로 전시든 어느 경우든 지금 계엄법의 기본 취지와 헌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입법부는 작동한다고 하는 전제예요. 행정, 사법이 교란되지만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매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권능과 권한은 기본적으로 전시든 어느 경우든 작동한다고 하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 조문대로 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다시 무슨 사후 승인, 선 조치 해 버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 조치가 선 보장이에요. 이 법 전체를 다 무실화시키는 거라고요. 계엄법의 개정 취지 전체를 무실화시키는 거예요. 군은 언제든지 선 조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갑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조 2항이 국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는 출입조치잖아요. 그러면 ‘국회 심의 보장 위한 출입조치’ 이걸로 바꾸는 건 어때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논란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벌조항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국회 출입금지, 계엄하면 국회 출입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심의를 해야 될 것, 의장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한기호 위원** 다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 없는 젓이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심의 출입금지 그러니까 봉쇄를 한 게 결국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출입금지 조항이 의정활동을 보장시키겠다라는 논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 이 대립되는 의견을 어찌 됐든 우리는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뭔가를…… 이 틀을 깨진 짧단 말이에요,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러면 군의 국회 출입금지를……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선의와 이런 거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고민하는가 하는 것도 이미 공유는 됐다 어느 정도 보는 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국회의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지금, 내일모레 또 계엄이 일어날 것도 아닌데 다 돌려보내셨는지. 그러니까 의장이 직접 경험하시고 겪은 과정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입장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협력관들 다 나가게 했고 국정원도 지금 밖에 어디 오피스텔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제한을 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출입금지가 그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돼요. 언제 계엄 또 하실지 어떻게 아세요? 10시 17분에 발표를 할지 01시 20분에 발표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2의 윤석열이?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요지는 어찌 됐든 의장의 의정활동 혹은 국회 입법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출입금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해제했어. 또 며칠 있다가 2차 계엄을 해. 그러면 또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게 그냥 ‘너네는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 이 목적보다는 결국은 입법부의 권한을 보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여기 문구를 정확히 보시면 ‘계엄 시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시작해서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계엄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맞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계엄의 대상이 아닌 건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헌법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박선원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야지요, 지금 이거 맞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출입금지로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박선원 위원** 안 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안 돼요?

○**박선원 위원** 입법부 자체에 대한 권능과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지. 훨씬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엄 시행 중에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여기 지금 파견 나온 인원들을 못 들어오게 한 조치와 이걸 연계시키는 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계엄 시행 중에 지금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해제하는 활동들이 의회에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항상 의회의 의결은 그 계엄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라고 넣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계엄 중에도 계엄사령관 불러 가지고 의장이 어떻게든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 다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의결 행위에 대해서 보장하고 이거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봐준다면 실제로 여기에, 아까도 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차관님, 국회 보안 목표는 뭐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가 가급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통방법에 해당돼요.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도 가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엄은 안 생길 겁니다, 전쟁이 안 나면. 지난번 계엄 하고, 몇 년만에 났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없을 텐데 실제로 나중에 누가 우리 다 떠난 이후에 법을 보더라도 이 법에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거지 이걸 지금 방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법 만드는 거.

○**소위원장 부승찬** 이거 한번 위원님들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회 출입금지는 결국은 본래의 목적은 입법권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입법부의 활동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입법부를 보장하는…… 정확하게 입법권은 국회 권능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을 했을 때 그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권이 아니고

입법부 전체란 말이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입법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입법권 따로 있고 탄핵권 따로 있고 예산심의권 따로 있고 그렇게 나눠진다니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게 탄핵권이든 탄핵소추든 뭐든 전부 입법권이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있어서의 입법부의 권한 그러니까 입법부의 활동 방해 목적의 국회 출입금지 하면 안 되냐 이거지.

○**허영 위원**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권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차원에 있어서 국정감사 등 이런 권한이 있고 예산·심의·의결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계엄 해제만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만, 만약에 계엄 중에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정감사 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는 군대가 동원될 수 있다 이런 억측의 해석 같은 경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은……

○**소위원장 부승찬** 입법·심의의 개념이 뭐예요? 전문위원님, 입법·심의에 예산·결산·심의, 국정감사 이게 안 들어가나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입법을 논리적으로 강학상으로 보면 광의로 보는 경우하고 협의로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광의로 봤을 때는 입법권이라 하면 의회에서 하는 모든 권한을 다 포괄할 수 있고요. 협의로 봤을 때 입법권이라 하면 국회에서의 법률안,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따로 예·결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요, 삼권 분립에서의 입법부의 권한하고요 입법권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분명하게 사법, 행정은 대상이고 입법은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마치 계엄 시에 입법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를 제약하지 못한다고 자꾸 좁히면 안 됩니다.

○**한기호 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국방위원장님이 아니면 부승찬 소위원장님이 지금 계엄 상태, 우리 국회가 계엄도 통과시켜 줬어. 통과시켜서 지금 계엄 상태야. 그런데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소속이거나 군인이거나 한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위원장님도 밖에 나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합법적으로 다 승인됐을 경우라니까 그런 것을……

○**박선원 위원** 법이 다 다른 거 아니예요? 지금 계엄법에서 다루는 거하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원회 하지 맙시다!

○**한기호 위원** 아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래요?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박선원 위원** 이거 하지 말자고. 계엄법 개정하려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엄 허용할 법 만들고 있어요?

○**한기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박 위원님, 계엄 허용할 법이 아니고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박선원 위원** 곰곰이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헌법……

○**박선원 위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거는 하위법이에요. 헌법에 계엄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박선원 위원** 헌법대로 안 돼서 지금 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헌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헌법에 관련돼서 구체화를 시키는 게 계엄법인 거지, 헌법에 명확히 입법부의 활동을 보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박선원 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계엄과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공간을 터 주는 법이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그거에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잘 보세요. 헌법이 있어요. 삼권분립이 있고 입법부에서 계엄과 관련된 법이 있어요. 조문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앞에 불체포특권도 현행법으로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돼서도 현행법으로 체포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이런 때 풀어 줘라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이지. 그런데 뒤로 탁 넘어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 출입 조치는 그냥 국회의원의 국회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출입금지가 아니라 아예 입법부 자체는 성역이니까 너네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게 헌법이 필요 없는 조문이 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3조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13조도……

○**박선원 위원** 그래요. 그런 주장 할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조현천 문건부터 한번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조현천 문건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포고령을 해 놓고 그다음에 ‘포고령을 위반하면 국회의원들을 현행법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권한 자체를 제약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행법에 대한 것도 이미 해제하기 전에 선포를 해 놓고 포고령에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현행법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해제하는 권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박탈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현행법 논란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무사 조현천 문건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현행법 논의도 사실은 잘못한 거라고요. 어느 경우든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왜 현행법이라고 하는 조항을 악용하려고 했겠습니까? 포고령은 그 자체로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 버리고 포고령 되면 그것이 그 어떤 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현행법 보호조항이 있지만, 포고령 위반한 거는 모든 것이 다 현행법이니까 국회의원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게 조현천 문건이고 그게 여기에 암암리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현행법 논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구금되어 있는 사람도 의결할 때는 풀어 주라고 법에다 명시했잖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금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용인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전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윤 모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을 석방시켜서 까지 해제 결의안에 참석시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참석시켜야지. 여기 이 법으로는 참석시키는 거지.

○**박선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해제를 결의할 수 있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의원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에 있다. 그런데……

○한기호 위원 그분도 나오라 이거야.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의 원래 출발은 뭐냐면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현행법.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렇게 되면……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이 현행법에 대한 규정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포고령으로 먼저 모든 국회의 활동과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대로 계엄이 선포됐고 그것대로 포고령 제1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게……

○박선원 위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머리 식하고 다시 한번 소위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오늘 해야지 뭘 다시 해요?

○박선원 위원 안 돼요. 위원장님, 안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국회 출입……

○박선원 위원 아니, 모든 게 만장일치라면서? 안 돼요.

○한기호 위원 아니, 오늘 해야지 뭘 또 늦춰요, 늦추기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아니,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박선원 위원 아니요, 다시 합시다. 우리 당도 정책위원회 다시 한번 거쳐야 되고,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위원장님, 우리 당의 공식 절차 다시 한번 거쳐야 되겠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심사를 할 건지 아닌지를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계엄법이라는 게 헌법 위에 존재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헌법이 입법부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요. 계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헌법상에 명시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계엄법은 해제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 입법·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입 금지 조문을 넣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아니, 계엄법에……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박선원 위원 아니요, 원칙적으로 동의 안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계엄법 자체에서……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아니, 제가……

○박선원 위원 입법부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에 넣어서 굳이 입법부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오히려 이 계엄법을 통해서 입법부를 침탈할 틈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계엄 시행 중에……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건데 제가 여쭙는 것은 계엄 시행 중에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출입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지요?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 질문이 어렵다고 쉽다고 누가 판단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계엄이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엄이 시행 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계엄체계 안에서 국가가 입법부를 제외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든 뭘 하든 간에 대통령 행정부와 계엄사령부가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원칙적으로 조화롭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이미 시행 중인데 또 무슨 특작부대가 나오고 또 무슨 전시인데 대전에 있는 북한군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 여의도를 침탈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계엄 시행 중이고 전시라 그러면 입법부는 대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소산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개념상 입법과 입법부는 존재하고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 외에 어떤 틈을 주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의견……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모순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시행되다가 상황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해제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상황이 되면? 그때의 의결권을 지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엄법 개정의 취지는.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은 문구 수정을 좀 하면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시행 중에도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 출입을 금지한다 이게 용납이, 제 머리로는……

○**박선원 위원** 안 되지요. 계엄법으로 무슨 입법부의 권한과 작동을 보호하고 보장하나 마느냐가 왜…… 그건 계엄법의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박선원 위원** 들었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계엄 시행 중에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건 맞잖아요.

○**박선원 위원** 보장한다 만다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윤상현 위원**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박선원 위원** 그걸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계엄법으로 입법부가 작동되고 가동되는 것을 보장하나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입법부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 되는 거라고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건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거지. 여기에서 타협을 보면 그 틈을 열어 주는 거라니까요. 정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타협이 아니지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엄 시행 중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계엄 시행 중에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 이거지요.

○**박선원 위원** 있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있어요?

○**박선원 위원** 그럼요. 왜 대상도 아닌데 보장하나 마느냐를 문장에 넣는 것은 완전히 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면 앞의 것도 다 어긋나지요. 그렇게 치면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논리라면 앞의 불체포특권도 마찬가지고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삼권분립에 따라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의 조문들도 그 논리대로 하면 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박선원 위원** 좀 협의를 합시다, 위원장님.

○**김병주 위원**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13조의2만 해결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요.

거기에 이런 행안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어차피 계엄과 관련해서 행안위도 관련될 수 있고 또 우리 국방위도 관련될 수 있고 정보위도 관련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및 의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좀 여유 있게? ‘상임위원장 및’……

○**박선원 위원** 그러면 성일종 위원장이 여기 문 열어 주시게요?

○**한기호 위원** 아니, 사람을 부를 수 있다는 거지.

○**박선원 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고.

○**한기호 위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법을 못 만들어요.

○**박선원 위원** 현장에 기초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논의를 하는데 서로 팽팽하게 이 조문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 지금 13조의2인가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출입 금지.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국회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서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이 조문을 넣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받겠다 그러는데 또 이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냥 이대로 하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허영 위원** 그런데 국회 경내는 헌법이 규정한 그런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입법부 그 자체 전체적인 규정하에 있어서의 출입 금지 조항을 넣어야지, 어떤 특정한 회의나 이런 것에 한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넣게 되면 입법부의 권능 자체가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헌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계엄법에 넣는 것은 맞는데 헌법에

입법부의 권능을 보장해 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허영 위원** 그런데 계엄은 굉장히, 모든 헌법적 체계를 초월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이잖아요.

○**한기호 위원** 여기 지금 명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성지지, 성지, 성지가 된다고.

○**박선원 위원** 성지 맞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 하려 올 때 미국 SS가 입법부에 못 들어와요. 대통령 경호하는 SS도 못 들어옵니다. 소수의 총기를 들지 않은, 소수 너댓 사람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성지 맞아요, 행정부와 입법부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출입 못 한다는 게 무슨 성지입니까? 그걸 자꾸 전시상황 이야기하는데……

○**한기호 위원** 극단적으로만 자꾸 가면……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계속 도돌이표니까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법안들도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조금 더 다른 법률부터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로 미뤘다가 이게 안 되면 결국 계속 심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선원 위원** 아니,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뭐가 문제라고 위원장님은……

○**김병주 위원** 그냥 정부 측 안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것?

○**허영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가 마련한 안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박선원 위원** 왜 자꾸 손을 대려고 그래.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및 제64항 군인급식기본법안 및 군급식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소위 심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과 제64항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급식기본법안과 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급식법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안은 24년 11월 26일 날 소위 심사를 거쳤습니다.

당시 소위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농업, 축협, 수협 등에 국가사업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자는 검토보고와 국방부 의견에 대해 제21대 국회 통과안, 즉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또 한편 군급식은 군 장병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제21대 국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규정을 들어서 이 규정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황희 의원안은 25년 2월 6일 날 발의돼서 오늘 소위에 직회부된 사항입니다. 동 법안은 당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황희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으로는 황희 의원안 제7조에서 군급식을 위

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부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를 두되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법인 관계로 7페이지 이하 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두 개정안을 병합하여 조문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법안은 한 번 했었던 부분인데요, 황희 의원님 법안이 들어오면서 병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명과 관련돼서 먼저 제명을 각각 군인급식기본법안과 군급식법안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저번 소위에서도 제명을 군급식기본법안으로 하는 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명과 관련돼서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법의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군급식의 질 향상, 군인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황희 의원안은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 도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정안 모두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하여 여러 조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어서 목적에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 도모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수정안에서도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 도모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2조(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규정으로 ‘군급식’과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희 의원안에는 ‘군급식운영관계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안 제12조에서 군급식운영관계관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식단작성, 식품 수납·검사, 조리·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정의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의 제3조(국가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기호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의 군급식 시책의 목적으로 ‘군인의 건강 증진’을 두었고요. 황희 의원안은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 그리고 ‘건강 증진’, 따라서 황희 의원안은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 부분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군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급식 제공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심신 발달이 포함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5조(군급식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동 조항은 군급식 계획, 군급식 위탁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급식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방부장관 소속 군급식위원회에서 모든 군급식 위탁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군급식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제대별 군급식 위원회’를 조문에 반영하여 담당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제21대 국회 수정안에서도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와 ‘각 제대별 급식위원회’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는 한기호·황희 의원안의 제1항 각호 부분의 삭제 그리고 황희 의원안의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제1항 각호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별 여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부대 운영의 자율성 등을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고요.

제2항과 관련돼서는 식재료 및 군급식 단가의 결정은 국방부가 직접 단가에 개입할 수 없고 또 장병 급식비 역시 국방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에서 결정이 제한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2항 부분에 대한 삭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행안부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6조(군급식시설·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국방부는 시설·설비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병영식당·취사장 등의 군급식 관련 시설기준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서 운영 중인데 군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사적 목적과 상황 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황희 의원안 7조가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안에 없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영양사의 배치 등과 관련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의 배치, 군급식 전문 군무원을 배치하자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군무원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만 국방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추가 배치는 여러 여건상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제7조(식재료)와 관련해서 양 안 공통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원칙을 천명했고요. 한기호 의원안은 식재료 조달업무를 농협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고 또한 접경지역 내 농산물 등 우선구매노력 의무 부과를 규정하였습니다.

저번 소위 심사 때, 한기호 의원안 제7조 3항과 관련하여 지난 소위 심사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7조제3항 농·축·수협 국가사업 위탁 근거에 대한 삭제 의견에 대해서 21대 국회 통과안, 즉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국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급식은 군 장병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21대 국회 통과 조문과 충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번 검토 시에 한기호 의원안 제7조제4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어서 국방부 등에는 접경지역산 농·축·수산물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조문의 경제성 측면에서 4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제8조 내지 9조의 영양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는 군급식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령이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10조(위생·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입니다.

동 조항은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근거 마련, 전·평시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를 위한 선행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는 전시 군납사업소 사전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제정안에서 정하기보다는 전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전시행정 수행을 위한 정부의 비상대비계획 등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대 국회 수정안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황희 의원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각 군부대의 장, 군급식관계군인 등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준수해야 할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용어와 관련돼서 급식업무담당자가 군인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군급식운영관계관’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12조(군급식 운영평가) 부분입니다.

동 조항은 군급식 운영평가 실시 근거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황희 의원안은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군급식 운영평가 및 군급식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및 공표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국방부는 각 부대별로 상이한 상황·요건에서 군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바 군급식 운영에 관한 평가 시에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제한되므로 민간 전문 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음으로 31·32페이지의 부칙 1·2조가 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안은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황희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 조항에서 하위 법령 위임규정이 있어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군급식의 위탁 범위가 배송, 조달, 병영식당 운영 등 다양한데 모든 사안에 대해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대 운영의 자율성 제한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1대 국회 수정안에서도 동 조문은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 5개 조항만 국방부에서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의 군급식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기호 의원님하고 황희 의원님이 군급식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

하는 안으로 개정안을 주셨는데 사실 국방부장관 직속에서 전군의 급식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전군 단위 급식정책심의위원회 또 각 제대별로 급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항과 연계돼서 5조의 세부 의견에 보면 1항과 2항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위원회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식자재, 급식 단가 결정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의 체제로 할 것을 건의드리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제6조의 군급식시설·설비 문제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안을 양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국방시설은 국방시설기준이라는 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서 매 시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의해서 급식시설과 설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제7조에는 황희 의원님께서 영양사의 배치를 각 취사장, 급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는 영양사는 사단급 단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예하는 같은 급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서 1명의 영양사가 메뉴를 설정하면 사단 예하에 한 30~40개 정도의 취사단위가 있는데 동일한 메뉴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학교 급식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급식시설별로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영양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소요가 한 4000명 정도 나오고요. 이분들을 연간 운영하는 예산이 한 2000억 듭니다.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양사 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7조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서 한기호 의원님께서 주셨던 건데 이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8조의 영양관리, 군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을 국방부령으로 하도록 두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기준에 있는 급식방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바뀌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국방부령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방침을 적용하는 데 많은 제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기준, 12조(군급식 운영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들은 저희가 각 취사단위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급식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기호 위원님이 먼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견……

○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지금 국방부의 제7조(식재료) 관련 제3항에 관련된 의견은, 4항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농·축·수협 위탁 관련돼서 저희가 법안심사소위 시에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위원장님, 군수관리관입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말씀하세요.

○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이 3항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시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해 놨기 때문에, 현재 후방 지역에는 민간 위탁하는 회사도 있고 또 그것 외에 강원도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먹거리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농·수·축협만 명시해 놓으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국가가 허가한 모든 기관, 단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지난번 21대도 논의가 돼서, 지금 15쪽에 ‘2024년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 결과’ 이렇게 썼는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개별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국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주면, 그 당시에도 이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방부도 이것으로 바꿔도 문제없지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 한기호 위원 이것으로 바꿔 주시면……

○ 임종득 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소위원장 부승찬 혹시 한기호 위원님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박선원 위원 아니, 누군가에게 위탁한다는 게 부정부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할 수 있다’, 관리는 당연히 국방부나 사단에서 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지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당연히 제대별로 급식에 대한 통제 권한·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통제하는 영역입니다.

○ 박선원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그 지역의 토호들과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부정적인 면만 많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외가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지.

○ 한기호 위원 접경지역이 허영 위원님인데 허영 위원님도 얘기해 보세요.

○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허영 위원 지금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소위원장 부승찬 예.

○ 허영 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정리한 내용과 또 국방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로컬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들을 이 군급식기본법에 넣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접경지역 특별법상으로는 통제되기가 좀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물론 국민 보호와 국가 수호에 있겠지만 군인 주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면 업무와 또 상생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그러한 시스템들이 유지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이 있으니 그 조항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행정학교하고 학군교, 특히 학군교는 여름에만 입영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입영훈련을 하는데 그때만 사실은 집중적으로 급식 인원이 확 늘어나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단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식재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몇천 명 급식을 해야 되니까, 학군후보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괴산군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들어 있어요. 거기 농협에서 구매한다고 얘기하면 농협에서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식수인원을 사전에 얘기 안 하면 못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괴산으로 학군교가 갈 때도 지역의 인원들을 쓰고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이런 조건으로 갔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해소해 달라 하고 괴산군수님이 직접 찾아와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여기 급식법에 들어가야 돼요.

○임종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방금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4항 같은 경우에 워딩을 보면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고려해서 하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피해나 그다음에 군과 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넣어 줘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열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넣어 놔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

아까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영양사에 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지 사단급, 여단급에는 영양사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한 30개 내지 40개 단위부대 차원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국방부에서 2000억 원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조 4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접경지역’은 군부대가 소재해 있는 인근지역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휴전선 인근 부대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써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후방에 있는 부대는 어떻

게 되는 거냐, 전체적인 취지는 그 부대가 있는 지역의 물건이나 생산물을 써서 민군 관계도 좋게 하고 품질이라든지 선도 유지도 해라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좋은 내용인데 ‘접경지역 안에’보다는 ‘군부대 인근지역’이라든지 ‘군부대 소재지’ 이게 더 포괄적 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접경지역’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한기호 위원님 내주신 것 중에 3항하고 4항이거든요. 3항은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21대 때 된 것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국가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4항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급식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같이 넣어서 4항은 그대로 살려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여기 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안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정법이고 군급식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저도 넣는 것에 동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한기호 위원** 허영 위원이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겁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박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보통 접경지역 특별법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한기호 위원님, 제정자로서……

○**한기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국방부 및 군부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 이것은 똑같은 문구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5번을 넣어서 ‘접경지역 외에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군부대는 해당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납품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만 하나 넣어 줘도 돼요. 아까 얘기한 괴산군수 같은……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수관리관이 좀 보충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국장님.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어차피 농·수·축협을 통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접경지역, 부대 인근 지역이 의미가 없는 게 군납하는 농협이 전국에 한 40개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군납하는 농협에서 그 근처의 것을 구매해서 군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있으나 없으나……

○**허영 위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 못 하겠는데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허영 위원** 군수관리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국방부군수관리관 이갑수** 대파 같은 경우는 김해평야에 많이 나오니까 그 농협을 통해서 받아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협이 전체적으로 가격이나 대량 생산하는 지역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배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만 하라고 하면 대파나 무값이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슷비슷하면 운송료를 줄이기 위해서 근처 농협에서 하는 게 맞는데 대량 생산되는 시금치, 대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40개 농협이 적절하게 물량을 분배해서 군납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앙회에서 완전히 컨트롤해 버리고 이마다 보니까 민원들 들어오는 것 보면요 이게 분명 어디 사단이 있는데 자기네 지역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저쪽 어디 다른 지역의 것을 갖다가 한답니다, 급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농축수산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마치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 그렇다는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박선원 위원** 또 추가로 조금만 더 부연말씀드리면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7사단, 제3보급단, 5공여단 많아요. 많고, 부평이라서 도시 같지만 거기 배후에 농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지 꼭 의무는 아니니까 방금 군수관리관님, 3번은 3번대로 살아 있잖아요. 3항이 사라지는 것 아니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3항은 삭제를 하고요 4항을 유지하는데 문구를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의견……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추가 문구를 저희가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추가 문구에 대해서 여기 소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 문구를 의원님하고 만들 때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정된 문구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7조 3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소위원장 부승찬** 대체, 이걸로 대체……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니, 7조 3항은 수정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걸로 수정하고 4항은 단어를 좀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및 제64항까지 2건의 군인급식기본법안 및 군급식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해 정리한 군급식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허영 위원** 잠깐 현안 관련된 말씀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하십시오.

○**허영 위원** 차관님, 그냥 국방부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 최근에 KDDX(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이게 전체 7조 8000억짜리 규모 예산의 사업인데 이걸 4월 30일 방추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현재 일정으로서는 3월 말이 아니고 4월 말, 4월 30일.

○**허영 위원** 예, 4월 말.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현재 의사결정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걸 왜 무리하게 결정을 하려고 하시지요, 방추위원들도 다 반대하는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 무리한 결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허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합정조달계획도 있고 또한 MRO에 대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사 타진들을, 그것이 절충교역 차원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관련돼 가지고 업체 간의 지나친 경쟁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고발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은데 왜 지금 차기 정부를 앞두고 이런 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KDDX는 미측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군 전력 증강을 위해서 이미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허영 위원** 아니, 늦어진 건데 지금 대선 기간 아닙니까, 대선 기간.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하고 지금 전력화하고 의사결정을 늦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왜……

○**허영 위원** 왜 어렵습니까? 이 7조 8000억은, 그러면 그 추후의 예산은 어느 정부에서 지정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KDDX 사업은 현 정부가 계획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이전 정부부터 이것이 사업화돼서 결정돼서 추진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허영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어요, 현 정부에서?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약간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문제되는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

○**허영 위원** 언론의 보도에는 전혀 해소되지 않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언론 보도까지는 평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보고받고 확인된 바로는 의혹이나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허영 위원** 그러면 지금 비록 법안소위이지만 그 해소된 것들에 대해서 국방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설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또 예산을 책임

지는 간사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한테 방사청이 가서 보고를 드렸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허영 위원**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러면 위원님, 제가 시간 잡아서 위원님께 방사청이 진행 상황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하시고 윤상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원식, 김용현 라인 죽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현대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해서 막판 수익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한두 달 사이인데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까지 오해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라인에 대해서는 한 6~7명까지 죽 있더라고요. 현대 그쪽에도 있고……

○**한기호 위원** 소설 같은데……

○**박선원 위원** 아니, 소설인데, 대개 한기호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면 늘 소설, 망상 그랬으니까요.

○**한기호 위원** 저는 라인 없어요?

○**박선원 위원** 위원님은 안 계시던데요.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차관님, 서해공정에 관련돼 가지고요. 선란 1호를 만든 게 2018년도라고 하고, 연어 양식장이지요. 또 작년에 선란 2호를 만들고. 최근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2022년도에 고정식 구조물이라고 해 가지고 헬기장까지 있는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인공섬 같은 형태의 고정식 구조물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는데 국방부는 다 알고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관련 내용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때부터 다 파악하고 있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이 양식장을 1호, 2호 만들고 앞으로 10기를 더 만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곧 대화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국방부는 참여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관련해서 국방부도 관련된 1개의 부처고요 그 관련된 정부 부처 간에 거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윤상현 위원** 그거를 하고 중국하고 상대할 때는 국방부는 들어갑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같은 구성 요소고 의견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제가 국방부, 외교부, 해경, 해수부 해 가지고 실무자분들하고 한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책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주한중국대사 불러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거 요구를 해라, 선란 1호·2호부터 시작해서 고정식 구조물까지. 그리고 우리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구조물 지어라. 적어도 이것은 영토 침범이다, 물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해상 영토 침범이다. 저것은 안 되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철거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지 저런 식으로 두면요, 남사군도 아시잖아요? 7개의 인공섬 만들고 거기에다가 미사일 격납고 만들고 무슨 레이더 기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동북공정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7년 시진핑은 트럼프 만나서 대한민국은 중국 역사 일부였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오늘 현안질의는 안 받아 주는데 처음이라 받아 줬습니다. 처음이라 받아 줬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의사일정 제65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날 소위에서 상정, 축조심사를 하였고요.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 시행 이전인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사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그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신규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산입된 사병복무기간만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심사 결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거는 지난번 논의에도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제한이 되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 정부 측 의견대로.....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소위원장 부승찬**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한기호 위원 18대에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건데……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이게 다시 또 한번 얘기하면 군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까지 확대가 되니까 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기는 군인만 관련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0항까지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66항부터 70항까지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황희 의원, 유용원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은 대학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던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소위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성일종·황희 의원안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을 대학 졸업 이후 학사장교 지원자 등에게도 지급하자는 개정안들은 3사관학교 및 간호사관학교 임관자 등 다른 초급간부에게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전체 초급간부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임관 경로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규백 의원안에 대해서는 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관련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심사 이후에 국방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새로 논의한 결과 개정안들이 모든 초급간부를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관 경로별로 일부는 중복 수혜를 받게 되고 다른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 지원자, 간부사관, 특수사관, 간호사관 후보생에게도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둘째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그리고 지급대상의 확대 그리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여부에 따른 차등적 초급간부 대상 적금상품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행법상 초급간부의 임관 경로에 따른 지원금 수준에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임관 경로별 형평성을 고려한 국방부의 수정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약 120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예산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국방부의 수정의견에 따른 초급간부 장려금 및 자산형성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한테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황희 의원님, 유용원 의원님이 관련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 냈지만 이게 부분부분별로 제안되는 게 있어서 다 통합해서 이것에 대한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안을 제시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방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 조문별 대비표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 제62조의2 2항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1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구 수정입니다. 기존 내용 중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완해서 문구를 추가한 내용이고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호는 수정사항이 없고 유용원 의원께서 제시한 2호에 보면 기존의 사관후보생에다가 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사관후보생은 포함을 하되 지금 뒷장에서 보고드릴 5호에 보면 부사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거론하는 걸로 해서 2호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3호가 학사장교들 중에 지금 현재 규정은 재학 기간 중에 학사장교를 신청한 사람만이 관련된 장려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졸업한 후에 학사장교를 신청한 인원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항에 ‘또는 졸업생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후보생으로서 준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만약에 3호 항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 980여 명이 좀 더 늘 것으로 보이고 예산은 한 120억 정도가 더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호입니다. 이 4호는 현역병에서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후보생들은 그동안 지급 대상이 안 됐는데 간부사관후보생들을 넣기 위한 조항의 문구입니다. 사실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 했을 때 보니까 한 16명 정도가 있는데 한 10여 명 내외 정도에서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호에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부사관에 관련된 규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들도 보면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들이 현역 모집 부사관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임기제 부사관으로 온 사람, 민간부사관 또 RNTC라고 해서 부사관학군단에서 임관돼 오는 인원들은 대상이 안 됐는데 그 인원들을 다 반영한 내용들로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임기제로 들어와서 그 혜택을 보게 될 인원이 한 490여 명, 한 50억 정도. 민간부사관에서 오는 부사관이 많습니다, 한 3500여 명 정도 해서 한 350억 정도. RNTC가 9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한 100명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400억 정도 이상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단서조항에서는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제시한 안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장려수당을 받는 장교·부사관들은 한 4700여 명 정도 돼서 한 690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100명이 추가가 되고 530억 정도가 추가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12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기재부하고 이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한 것을 최종 확정하고 기재부로부터 같이 동의는 받지는 못했는데 일단 법률 개정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런 법률 개정안을 내고 기재부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예산 확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던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수당과 장려금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여기 기재부 심의관님 나와 계시니까 의견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제가 솔직히 국방부 수정의견을 며칠 전에, 엊그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긴밀한 심층 검토는 안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방부 수정의견은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에 초급간부 자산 형성을 신규로 도입하자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제도 설계가 타당한지 현재로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방부 수정의견 3호와 관련해서는 3호의 문구상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불분명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동 3호가 대학 졸업생, 학사장교 중에 대학 졸업생 학사장교 지원자를 포괄하자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3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예정자가 있는데 만약 이분이 1월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주는데 대학 졸업하고 3월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안 준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현재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호 얘기입니다. 4호는 국방부 측에서도 간부사관·특수사관·간호사관후보생에게도 추가로 지급하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저희도 공무원 중에서 젊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이 학사·학군 출신 일반 장교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병역의무를 선택하는 시기에 과연 내가 현역으로 갈 거냐, 장교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학군·학사장교로 좀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직종, 예를 들어서 의사·간호사·변호사·목사 이렇게 되실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미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판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앞으로 갈 분야에 대해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 자체가 큰 메리트인데 추가로 장려금까지 주는 것이 타당한지,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군의관, 법무관, 군종장교 등 이런 특수사관들은 소위가 아니라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처우가 좀 더 나은 측면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5급 공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1년 근무하고 보통 중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단기장려금을 이렇게 주는 게 타당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5호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간획득 부사관, 보통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직업부사관으로 가시는 대다수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추가하자는 게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수당을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준 수당의 경우에는 과세를 해 왔습니다, 과세. 지금까지 보수로 보고 세금을 매겨 왔는데 이게 이제 장려금으로 되는 거는 비과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기복무장려금을 주게 된 거는 이게 임관하기 전 학생들한테 주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세금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비과세했던 것이고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임관 후 2개월 내에, 임관 후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보수로서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비과세로 바꾸게 되면 세입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 바꾸는 게 과연 세제정책상 맞는지도 약간 좀 의문이 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획득 부사관, 이게 부사관의 가장 중추로서 이제 군인의 길을 걷기로 하신 분들인데 현재 장기복무장려수당은 현재 군에서 근무 중인 현역병 중에서 일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하사관으로서 모집하는 유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결정으로 공개 모집하는 이런 부사관에 채용되겠다고, 어쩌면 중장기적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 보겠다는 분들까지 장려금을 주는 게 맞는지는 저희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초급간부 자산 형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준비적금을 도입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현역병들 자산 형성을 도와서 사회 복귀를 좀 돋자는 취지로 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직업군인한테 확대하는 것도 저희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든 장기든 군인연금에서 개인 기여금을 7% 내지만 국가에서 부담금을 또 7% 매칭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또 제대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사로 4년 근무하면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나오시면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통해서 가입 기간이 인정돼서 부분적으로 군인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군인공제회에서 5% 정도 되는 적금상품, 물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해 주지만 5% 금리 상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초급간부 처우 개선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수당 이 부분의 인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말에 인사혁신처 등과 협조해서 3년 연속으로 초급간부 기본급을 일반공무원 대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보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3%인데 하사·소위는 3.6%를 플러스해서 6.6%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업군인들께서 가장 아쉬워하셨던 시간외근무 수당도 150시간으로 늘렸고 GP 근무하시는 분들은 200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와 그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초급간부 자산 형성을 여기서 처음으로 도입할 경우 경찰, 소방 그다음에 또 하급 공무원들까지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나온 액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정 측면에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설명 감사드리고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제가 아까 추가설명에서 좀 빠뜨려서, 마지막에 적금 관련된 얘기는 안규백 의원님이 제기한 발의안 중에 있는데 제가 아까 그것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62조 3항에 안규백 의원님께서 장병들의 내일준비금 같은 것을 이제 간부들한테도 적용하는 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안규백 의원님 안은 간부 전체에 2년 적금하고 지금 병사들이 받는 것처럼 월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쭉 찾아보니까 전체 소요가 한 2000억 정도 되는 재원이 소요가 돼서,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안을 낸 것은 단기복무자들은 앞에 있는 장려금과 수당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단기복무는 제외를 하고 중기복무자, 즉 5년 정도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이 내일준비금과 같은 적금 혜택을 주자고 대상자를 좀 조정을 했고요.

적금 기간을 2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을 하고 월 30만 원 정도로 해서 5년을 해 주면 5년 근무하고 나갈 때 1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병사들이 근무하면서 55만 원 하면 그 정도 유사하게 되고 단기복무자들이 수당 받는 게 대략 한 1000~12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소요는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신규 소요이고.

이게 적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28년도부터 좀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면 28년도부터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안으로 저희 수정안을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기재부 담당 과장이 얘기한 것은 저희 안에 대해서 의견을 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 위원들이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과거부터 계속 주장하던 내용인데 항상 이제 부딪히는 게 기재부 재정소요 때문에 항상 부딪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서, 특히 사관학교 졸업 대상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다른 건 못 해도 병사들한테 적금 개념의 그거는 좀 주자. 그래서 지금 차관님도 임관 경로별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서로 이런 불균형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서 이 부분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더라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5년 차에 전역하는 사람들이, 객들은 복무한 거로 치면 중기 복무자예요. 전역하는 사람들이 육사 같은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몇 명이나 5년 차에 전역을 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1년에 전역하는 숫자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다 합치면?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한기호 위원** 뒤에 실무자, 차관님이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문희 서기관입니다.

지금 24년 현재 전역 승인된 인원은 1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장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19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신별로 자꾸 불평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은 해 줘야 돼요. 지금 사관학교 3학년이 얼마 받냐면, 4학년이 150만 원 받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4학년이 150만 원 받아요. 소위로 임관할 사관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병장만도 못해요’ 이렇게 직접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는 병장만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면 사관학교 다닌다고 해서 ‘너는 앞으로 장기할 거니까 너는 해당 안 돼’ 그러면 ‘나는 5년 차에 나갈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 형평성을 한번 기재부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형평성 때문에.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장기복무 장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관학교 5년 차 전역 인원은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10% 내외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년에 5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인원 자체는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이것 관련된 논의를 사실은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이 논의를 해 왔는데,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 첫 번째는 초급장교든 부사관이든 간에 임관 경로별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차별 이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형평성을 잘 갖추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금 국방부에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그 안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안이 형평성 차원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은 국방부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아니에요, 예산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재부 심의관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같이 국방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형평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해야만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당장 재정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예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또 예결위 간사이신 허영 위원님의 어떤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허영 위원 이게 새 장려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덜 걸립니까, 심의관님?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세제실에 제가 얘기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허영 위원 이게 올해 1년 내내 국정감사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그랬던 내용이에요.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을 안 하고…… 지금 법안이 나와서 법안 심사를 하는 데 와 가지고 그런 것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금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물론 대학생이고 아니고의 차이고 입학 전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장려라고 하는 공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이 군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복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병들의 월급은 지속적으로 올려 왔는데 부사관들과 초급장교들의 처우가 거기에 현저히,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단기에서 중기·장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는 그러한 처우 개선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500억 이게 사실상 전체 국가 재정에서 또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국토 방위와 국민 보호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과연 6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 예산 중에서 얼마나 차지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 소요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는 겁니까? 세금 감면 효과가 그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초기에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또 인원을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안을 내놓는 건데 애초에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수용 불가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법을 왜 냅니까? 그리고 여기에 국방부가 그런 합리적인 안들을 왜 제출을 합니까?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애초부터 수용 불가 의견 가지고 하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면 모든 입법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군 자원 자체가 점점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런 수요를 군 부대 내에 있어서 이런 처우라도 확실한 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자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징병제를 하건 선택적 모병제를 하건 앞으로 군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가 큰 틀에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하면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들 제대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또 2028년부터 한다라고 하는 적금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는 거고. 기재부가 너무 돈의 논리로 이렇게 하면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앞서 심의관께서 얘기하신 이것 애초부터 수용 불가다 이런 전제로 해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야 이게 계속심사로 남아서 심사를 하건 아니면 이번에 이것 해 가지고 쟁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기재부의 최소한의 단계적 수용 방안들을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저도 이것을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국방부 수정의견을 월요일 날 받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의견들을 제시한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방부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수용 불가입니까? 그것 철회하실 거예요? 아니면 검토해 가지고 안을 만드실 겁니까?

○한기호 위원 아까 뭐는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허영 위원 애초에 처음 할 때 수용 불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제가 동의하기 어렵…… 제가 진짜 월요일 날 봤습니다, 위원님.

○허영 위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수용 불가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만약에 국방위에서 저희가 제시한 안에 동의하시면 이것 법안을 올려 주시고 저희가 법사위에 갈 때 해서 최종 할 때까지 기재부하고 최대한 더 논의해 가면서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고 지금 전체 재원이 그냥 보면 산술적으로 했을 때 한 1200억이라는 건데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수당이.

그래서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정하고 또 재원을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가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추구하시는 초급간부들 확보하는 이것에 본질적으로 저희들도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지막까지 저희가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지금 방금 차관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안은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임관 경로별 형평성 차원 부분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맞아요. 기재부에서도 그것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통과시킬 것은 통과를 좀 시켜 주고 이게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심의관 나와 계시지만 각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때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부의 상부까지 안 올라갑니다, 제가 죽 경험을 해 보면. 지금 답변하고 이 선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계속 밀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단계로 넘겨 주고 기재부 차원에서는 법사위에서 정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리화시키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심의관님.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위원장님, 재정 당국 차원에서는 국방부 수정

의견을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시간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영 위원**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이 초급간부 개선 문제는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국회에 올릴 겁니다. 좀 더 봐야 될, 각 임관 경로별로 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 지금 이 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걸 하고 검토안을 만들어야지.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저희가 위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 엊그제 봐 가지고, 저만 봤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각 위원회, 특히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질 때 국방위에서 법률안이 심사되어지는데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위로 높게 보고도 안 될뿐더러 보고가 되더라도 관심을 못 가져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신경쓸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국방위 차원에서는 넘기고 법사위 차원에서 할 때, 예산의 배분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임관 경로별로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잖아요? 그것 동의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 예산비용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련된 건 그때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분은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기본적으로 임관 경로별로 하는 그 취지는 공감할 수는 있는데 각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급 공채 출신이라든가 군의관, 중위로 임관하는 이 모든 분들까지 과연 타당한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초급간부 개선 문제는 국방부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거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어제 월요일 날 보고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부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영 위원** 대통령이 얘기했는데도 기재부에서는 애초에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해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대통령이 심지어 지시를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위원장 부승찬** 심의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직업군 중에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데에 군 있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소위원장 부승찬** 경찰 있지요, 소방 있어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징병제로—아니, 국방의 의무지요—명시해 놓

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 방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1200억 이 정도를, 저는 1조 2000억도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왜 의무만 부과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왜 나 몰라라 합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정부 관료들이 국방을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오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희생을 하는데 최소한 국가가 이 정도는 해 주더라. 안 그래요? 저는요 그냥 이병부터 장군까지 기본급을 다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군·경찰·소방 이거 얼마나 된다고. 과거에야 군인들의 월급체계가 타 공무원에 비해서 높았지요. 기업에 비해서 높았지요.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갑니까? 왜 책임은 방기하고 의무만 지웁니까. 그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봐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회의 회의하기 전에 원 포인트로 다시 심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시간 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심의관님 입장도 이해를 하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 드릴 수는 있다. 그런데 국방예산도 보면 삭감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액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예산 효율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의무만 강조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많다고, 61조 중에 1200억 원이 여기 61조 안에서도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의무는 항상 책임이 따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따로……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군 가산점도 그렇고 남녀 갈등도 그렇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 간 갈등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저는 관심과 책임감에 있다고 보여져요. 충분히 이게 조절할 수 있고 국방부랑 기재부랑 논의를 하다 보면,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심의관님 그리고 차관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전체회의 전에 원포인트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받으셨다고 했고 기재부에 명확하게 보고도 안 된 상태라고 하니 그러면 원포인트 심의를 조건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는 위원장의……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10시에 전체회의 한다, 2시에 한다 그러면 한 시간 빨리 우리 법안소위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냥 법률안은 통과시켜서 법사위 가기 전에 토의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방안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심의관님 입장도 있고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 공식 의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관님?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월요일 날 보고 어느 정도 각 임관하는 경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여기서 법이 통과돼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최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국방부에서 받는 게 몇 월 달에 받지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5월 말에 받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5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5월 말에 받고 보통 법안은…… 편성 과정 하고 보통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가을에 올려서 합니다. 그 전까지……

○한기호 위원 우리가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게 지금 통과시키나 늦게 통과시키나 예산편성 시점으로 보면 되니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기재부가 검토 할 시간을 주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너무 억압하기보다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하든가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주지요.

○허영 위원 아니, 통과시켜 놓고 예산 하면 돼요.

○임종득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연도별로 해야 될 것도 있어. 이것은 몇 년도에 반영하고 몇 년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허영 위원 여기 이미 설계도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과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돼요. 저도 한눈에 딱 보이는데요, 뭐.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과장이 혼자 결정을 못 하니까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거지. 과장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지, 예산실장하고도 논의할 거고.

○허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2일까지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행상…… 법안 심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잘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법안 통과는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먼저 가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허영 위원 그럼요. 위원장님 안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일단 전체회의 상정 전에 끝까지 한번 기재부에서 논의를 하시고요. 국방부랑 논의하시고 그 이후에 법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법사위로 올라가면 협의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것은 12월 2일이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전체회의 당일 날 이것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심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국방부와 기재부 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액수를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올 12월 2일까지 진행하면서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회의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0항까지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7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하자면 법률적 근거 없이 실시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정부는 일부 자구 수정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구 수정 내용은 4페이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24일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위원님 의견이 개진되어서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4개 지방청 중에 11개 지방청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은 6만 5000명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센터를 더욱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병역들의 진로설계라든가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인원을 뽑아 가지고 교육하고 승진시키고 보직하고 또 퇴사하거나 전역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것 자체를 해당 기관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무청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전역을 하고 나면 예비역들에 대한 관리를 지금 병무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아예 법에다가 개정을 통해 박아 가지고 예비역들의 진로설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국방부차관한테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을 국방부 차원에서 동의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일단 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입영 전부터 입영 간 또 입영 후, 전역 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국방부가 해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필

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의 임무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현 상태에서 그것을 국방부가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상당한 조직과 임무, 기능 등이 국방부로 전환되지 않으면 사실 임무를 수행하기가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우 좀 어렵고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하고 의견을 주고 이런 쪽에서 병역 전체 설계에 대한 것은 병무청이 주도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쪽으로 일단은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그 자체의 법안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검토가 양 부처 간에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법률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논의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제시를 안 하면서 갑자기 또 법률로 해 가지고 진로설계 부분을 병무청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지금 한 단계 더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법률로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진로설계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률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뭘 했어요? 저한테 와 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국방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고?

**○병무청차장 최규석** 동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최초로 병역 의무자가 찾아오면 직업 선호도검사를 하고 자격이나 적성에 맞게끔 특기를 추천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군에서 복무를 하고 나중에 그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그다음에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취업 관련 자료가 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역 관리 전체를 병무청에서 하겠다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세부적인 절차에 관계된 문제를 제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누가 하더라도 그 절차는 끝아야 돼요, 국방부가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업무 분장과 관련돼서 합리성 차원에서 국방부가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앞으로 시대 변화를 놓고 봤을 때도 다른 부처와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법률로 안 되어 있는 걸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로 박아 가지고 그 부분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병무청이 이 업무와 예비역에 관한 취직 보장과 관련된 업무의 근거를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조직도 가져갔고 예산도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률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조직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이 돼야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점점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병무청 기획조정관 문경식입니다.

지금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의 출발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청년들의 군생활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미리 군생활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나의 특기가 이런 것인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군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일정 인원의 취업맞춤특기병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군에 입영을 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군에서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역해서도 당초 목적에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취업과 연계가 되는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역, 전역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컨설팅했던 청년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저희가 11곳을 또 예산 확보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하고는 있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을 이번에 하려고 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전반적인 군과 관련된 예우 사업은 당연히 국방부가 총괄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취지, 출발선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비역에 관한 취업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국방부와 보훈처와 병무청이, 3개 기관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처에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조직과 예산을 지금 예비역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부처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여기 보훈부에서 나오셨나요?

○**소위원장 부승찬** 없습니다.

○**허영 위원**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도 제대군인지원센터 이거하고 업무 중복성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병무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부하고 협의가 되셨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허영 위원** 어떻게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정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소관 업무 침해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동의했습니다.

○**허영 위원** 동의를 했습니까, 보훈부 측면에서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보훈부는 개정안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병무청 차장님, 지금 1년에 신체검사, 신검이라고 그러지요 몇 명 받습

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21만 명 정도 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5만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5만 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병무청 전체 인력 변화는 얼마나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병무청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업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는 크게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박선원 위원** 원래 신검이 중심 업무 아니에요? 징집하고 신검하고.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청년 자원 대 주는 게 병무청 임무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한 20% 이상 줄었잖아요. 20% 줄었는데 병무청 인력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국방부는 인력이 부족하고 병무청은 인력이 남는데, 그래서 임종득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격상 국방부로 가져와서 지금 데리고 있는 우리 병들을 관리하면서 진로 설계도 해 주고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국방부는 인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국방부 업무인데 인력이 남는 병무청에서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조직이라는 게 새로 키우고 예산 달라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사실은 일은 주는데, 객관적으로 병무청의 일은 주는데 인력 변화 없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일을 늘리고 국방부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인력 없으니까’ 국방부 일인데 넘겨줘 버리고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우리 병들의 입대 이후의 병역진로설계 이런 거는 현장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병무청보다는 국방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되는 것 아니냐. 정 필요하다면 병무청의 인력을 국방부에 가서, 군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옮겨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뜻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급한 건 아니지 않나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예.

○**병무청차장 최규석** 검사 인원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체검사 인원은 정확하게 준 인원은 확인해 드릴 수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으나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입영신체검사를 동일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 자체가 검사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검사 인원이 늘어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러니까 입영 직전에 하는 게 입영신체검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남성에 대해서 19세 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병역판정검사입니다. 이 두 인원을 합하면 40만 정도 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관료제는 스스로 확장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행정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줄고 더 효율화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안 하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국방부 업무를 데려가고 국방부는 ‘아이고, 그쪽에서 인력 좀 남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래 버리면 과연 원래 취지에 맞는 거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

아요, 임 위원님 말씀도.

○임종득 위원 예, 맞습니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위원장님, 저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인력정책과장 문희 병무청하고 같이 업무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병무청의 병역 이행 의무 전부터 쭉 복무 중에 그리고 추후에 전역하고 나서까지 청년들의 사회 경력, 사회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러 단계에서 병무청, 국방부, 보훈부가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하는 업무는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할까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경력이나 앞으로의 사회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먼저 얻고 병역 이행 전 단계에서 병무청 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 국방부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자원개발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복무 전에 그리고 복무 중에, 나중에 복무 이후에도 계속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 개정안에 의해서 병역의무 이행 준비의 지원이라고 일단 문구를 좀 한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병무청에서 학교가 요청하면 가서 직접 병역진로 상담을 해 주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1년에 몇 개 학교 나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찾아오는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방문을 하는데 그 학교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두 번째,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나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센터에서는 6~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모직 상담 인원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되기 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지원하는 활동은 예산은 있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한기호 위원 예산은 있는데 편성 인원은 이게 됨으로써 인원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나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14개 지방청 중에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2개 정도 더 설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인원은 안 늘어난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지금까지도 인원을 자체 충당을 다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두 번째, 예산은 추가 편성이 되는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2개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센터별로 10억 정도 되니까 20억 정도……

○한기호 위원 그것 추가되는 것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한기호 위원 내가 병역진로 설계하는 것을 춘천에서 직접 현장에 다 가서 처음부터 다 보고 교육하는 것부터 면담하는 걸 다 봤는데 상당히 가치는 있어요, 군대를 전혀 모르는 20세 이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역한 이후의 것은 지금 세 군데에서 하거든요. 국방부가 장기복무자하고 보훈부가 중기복무자하고 그다음에 병무청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지금 아마 통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훈부가, 여기도 제대군인지원국장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훈부 걸 가져오려면 보훈부 조직이 국방부로 와야 되고, 이것은 못 가져올 거고. 병역진로지원센터가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병무청 산하 조직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가져올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 있는 데서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잘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병무청은 이 법을 낸 게, 물론 이게 병무청에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 법을 냈겠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법에 안 넣고는 못 했나? 왜 이걸 만들지요? 법을 만들었으면 뭐가 더 좋아져요?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병무청차장 최규석 2000년 이후로 지금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위원 그러면 왜 법을 만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설립 근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긁어 부스럼 하는 것 같아.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국회 결산 당시에 입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한기호 위원 예결위에서?

○임종득 위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직과 예산. 결국은 그거야.

○한기호 위원 23년도에?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이걸 지금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개를 더

확보하지만 지금도 예산은 편성돼서 나가고 있고 실제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뭐가 더 좋아지느냐 이 얘기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법을 만들지. 뭐가 좋아지느냐.

○**병무청차장 최규석** 명확한 설립 근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장래에 운영하다 보면 더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아까 박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다 부대조건으로 직원 충원은 없다고 토를 달든가 해 놓고, 이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두겠다는 것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봐서.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사람도 있고 센터도 운영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 예산 확보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센터 운영하는 데 시설도 더 추가할 게 없다 그러면 인원 늘어나는 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토 달면 되고.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위원님, 아까 박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조직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 증가 또는 감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5% 정도 장기적으로 감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력이 급증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검사 인원은 줄었는데 인력이 남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2조의5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와 관련돼서 병무청에서 뭘 할 수 있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제대·전역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안내해 주는 정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게 전부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냥 병무청의 임무·역할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애초에 병역진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병무청에서는 여기에 한정하면 그나마 조금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역할도 보니까 대부분의 역할이 거기에 치중돼 있는 것 같던데.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 문제 제기의 중심에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좀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보훈처나 병무청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법으로 자꾸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조직과 예산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부정이 안 될 겁니다.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해야 될 일, 이것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

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병역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조직 인원의 감소 유인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법제화된 내용들의 근거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전역 후에 병사들의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병무청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거기에도 결국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직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보훈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부들 관련된 것 보훈처에서 지금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 부분들을 다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에서, 청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예비역들에 대해서, 예비역들의 권리 신장이나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타당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방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정확하게 차관님도 들으셔야 되고 병무청도, 보훈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본질은.

○한기호 위원 국방부에는 제대 또는 전역한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업무를 담당하나?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인복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적자원개발과 이렇게 해서 아마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하에, 제도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법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위성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박선원 위원 동의합니다.

○허영 위원 두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국방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임종득 위원과 박선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4항까지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4항까지 안건입니다.

염태영·김준혁·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에서 보시듯이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작년 11월에 한 차례 심의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염태영 의원 및 김준혁 의원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하여는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미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김준혁·김태년 의원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준혁 의원안은 현행 45m 제한을 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안은 90m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준혁 의원안은 비행안전구역 간 경계부분 표면높이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7분의 1 기울기를 1분의 1 기울기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태년 의원안은 차폐이론 적용 가능 구역을 확대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행안전 확보와 국민재산권 보호 간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정부는 개정안 모두 부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항공기의 안전 운행과 국민의 재산권 확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소위 시 위원님들 발언 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가서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을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제적인 규범에 의해서 못 해요.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현행 고도제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FAA나 ICAO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를 들어서 길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고 그다음에 FAA는 7구역까지 있는 게 저희는 없는 점, 이런 것은 일부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국제기준을 이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밝혀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ICAO나 FAA 미항공청의 법규를 정확히 준용하는 건지?

그런데 각국의 사례를 보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자세한 답변은 저희 공군본부……

○**소위원장 부승찬** 예.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양영준 대령입니다.

지금 현재 전술항공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FAA 그리고 미 국방시설 기준인 UFC에 나와 있는 이매지너리 서페이스(imaginary surface), 그러니까 클래스 B 런웨이에 대한 이매지너리 서페이스라고 하는 비행안전구역을 준용을 해서 만들어졌고 다만 FAA에 명기되어 있는 7구역, 저희가 외부에 있는 수평 평면만 제외를 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게 설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이게 이 규정을 따르더라도 결국은 각 국가의 어떤 환경에 맞게 고도제한을 조정해서 운영되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따르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이 규정을 따르는 이유가 그냥 100%,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완전 비행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산악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영토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고 그런 상황에서 FAA나, 어찌 됐든 기준을 그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ICAO 규정을 준용을 하더라도 이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항로 자체를 한정시켜 가지고 다른 쪽은 풀어 주잖아요. 그런 공항들 사례들도 있고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본 사례도 민항 부분에서 일부 융통성 있게 조정된다는 사실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와는 다른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군용항공기에 있어서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또 공군에서도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시에도 많은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저도 위원장님이 한 이야기와 연계해 가지고 질문도 하고 싶고 또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비행장의 어떤 피해 방지, 그러니까 피해 방지를 위한 고도 통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젠가는 풀어야 될,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로 24시간 전투기가 운영되고 있는 전투비행단의 고도제한하고 실제로 전시에만 운영되는 임시활주로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고 그 근거를 뭐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기지발전과장 양영준 대령입니다.

전술항공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AA와 UFC 이매지너리 서페이스를 기반으로 저희 상황에 맞게 7구역을 해제한 제한구역을 적용하고 있고 비상활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작게 운영을 최소한으로 해서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역구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사실은 임시 활주로는 1년에 한 번 훈련합니다. 앉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앉아요. 대부분 공패스로 그냥 낮게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에 있는 활주로가 45년간 고도제한에 의해서 모든 개발이 통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앓는 걸 몇 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지금 고도제한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많이 나지 않아요.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전시에 사용할 임시활주로는 전시가 되면 거기 사람 살겠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고도제한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높이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부분을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군에서는 전시활주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지금 세 분의 안에 대해서 전체 부동의를 하셨는데 특히 김태년 의원안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차폐이론 적용 가능구역 확대 측면하고 그다음에 군사기지심의위원회 관련된, 시설보호 관련된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역주민 포함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도 부동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보는 당사자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무리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보안각서 등 그것을 위반할 시에 있어서 처벌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역주민들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이미 차폐 이런 관련 적용 가능구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열어 줘서 재산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그런 어떤 법안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전향적인 견토의견이 없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는 총 3단계, 부대·합참·국방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건축 행위는 대부분 부대에서 마무리됩니다. 부대에서 마무리될 때 통상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참석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저희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허영 위원** 이해당사자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거기서는 이루어지는 회의 자체가 저희 또 군사 기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직접 참여보다는 지자체를 통한 간접적인 의견 표명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들습니까? 그러면 관할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듣고 참석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지금도 건축 행위가 접수가 되면 공무원이 그거를 저희한테 송부하는 형식으로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허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받는 그 지역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완전 배제를 하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피해, 권리 재산권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는 것입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위원님, 저희가 다양한 어떠한 그런 팩터를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고도제한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은 어떻게 보면 여기 법에 정해진

대로 높이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일부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예측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했을 때 그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좀 적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관할 공무원이 그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듣고 참여하게끔 해야지요, 아니면 직접 참여를 시키거나.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관할 공무원들도 건축 요청된 거를 들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차폐이론 적용 가능구역 확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차폐이론은 기준에 저희가 구역보다 높은 어떠한 산 같은 자연 지형지물이 있을 경우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일부 완화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런 차폐이론을 적용하는 곳은 활주로의 주 방향이 아닌 측면 방향만 저희가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인 4·5·6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 주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님……

○**허영 위원** 이미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제한에 걸리지 않는 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아니,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년 의원님께서는 활주로의 주 방향, 착륙과 이륙의 주 방향인 2·3구역에도 차폐이론을 같이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군의 의견하고 종합해 보면 활주로의 주 방향이야말로 저희가 정말로 급하게 기동을 하면서 회피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번만 들을게요.

45m에 대한 근거는 어디예요? 고도제한 45m, 45m의 기준을 설정했잖아요. 50m도 아니고, 45m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록이 되니까. 자신 없으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나아요.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45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공군이랑 국방부에서 ‘현행 고도제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FAA 및 ICAO 규정을 준용, 국제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회신.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군사시설 보호법과는 달리 무기체계에 따른 시설별 관련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고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FAA나 ICAO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FAA나 ICAO 규정을 군 기지에서 의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세계의 각국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고도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제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것 45m는 확인해서 알려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 두 번째 답변은 뭐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위원장님,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기체계별 탄력적 운영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던 부분이고요.

FAA하고 그다음에 ICAO 규정이 사실상 저희 공군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군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영국 같은 경우는 91.4m까지 풀어 줬대요. 그리고 FAA 규정의 그 고도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마냥 관습에 의해서, 과거의 틀에 얹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미 공군과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타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행 운용이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아니, 이게 활주로 주 방향은 위험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그러면 다른 방향, 주 방향이 아닌 예를 들어서 4·5·6구역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방부나 공군에서도 설명을 못 해내고 있잖아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군에서는 4·5·6구역을 평상시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의 민원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데 전시가 되거나 위급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나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이제 진짜 과거…… 이게 너무 오래된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닌가? 혹은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잠깐만요.

한기호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 허영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내륙 지역은 주로 헬기장이 많이 있는데 헬기장에도 비상활주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비상활주로로 전시에 쓸 활주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활주로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지 않아요?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기지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사보호구역 별표를 참조하시면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은 3구역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 전술항공기지는 6구역까지 설정되어 있어 엄연히 지금 차이가 굉장히 작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술항공작전구역 5·6구역을 김태년 의원은 2·3·5·6구역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면 2·3구역은 정말 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측면인 4·5·6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술이나 그다음에 지원항공기지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역 전체를 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그 부분은 지금……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5·6구역은 지금 거기에 있는 장애물을 고려해서 차폐이론이라는 걸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 때문에 어차피 위험해서 피할 수 있는 높이까지는 다 허용해 주자라는 거라서 그거는 요청에 의해서 공군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높이를 따로따로 설정해 줘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전술항공작전기지 4구역은 제외돼 있잖아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4구역은 거기 활주로 바로 옆 단입니다.

○**허영 위원** 옆 단입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예. 거기 경사로 7분의 1로 올라가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자연 지형물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아니, 지난번에 잘 적어 놓으셨지만 군용 항공기 기준으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 사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 범위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준혁 의원안 9페이지에 45m를 300m로 완화해 달라하는 거하고, 김태년 의원안 45m를 90m로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45m를 기준으로 하면 김태년 의원안은 45m만 더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하는 거고, 김준혁 의원안은 45m가 아니라 255m를 더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허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김태년 의원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정도는 지금 수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차폐이론 적용 가능구역 확대도 2·3구역을 제외하고는 좀 해서 그래서 45m를 90m로 하는 부분하고 차폐이론 부분에서 4·5·6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내 놔야지, 한 사람은 45m를 300m로 요청했고 한 사람은 45m를 90m로 요청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들, 그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법률로서 규정을 만드는, 기준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45m로 적용돼 있는 거를 90m로 좀 조정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여건의 비행장이 있고 이건 반드시 45m를 준수해야 되는,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비행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의 기준을 만들 때 그걸 다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규제가 돼 있는 것을 법률로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융통성 있는 적용은 각 지역 국방부 심의회에 올 때 그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군이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보고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요. 차관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군 공항 몇 개 있어요, 군 공항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전술항공기지는 16개가 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비상활주로 말고……
-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전술항공작전기지는 16개가 있고……
- 박선원 위원** 16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16개 중에서 다 지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예, 맞습니다.
- 박선원 위원** 수원 비행장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원주 비행장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군본부기지발전과장 양영준** 예.
- 박선원 위원** 그러면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니까 일률적으로 정해 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똑같이 김태년 안으로 16개 공항에 한번 죽 적용을 해 보고 김준혁 의원안으로 한번 죽 적용을 해 봄에서 그 가운데서 조정할 수 있는 공항이 몇 군데고 기본적으로 법으로 유지돼야 될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뽑아 봤느냐 이 말이에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들이 지금 공군하고 해서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90m, 300m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세부 비행장별로……
- 박선원 위원** 아니,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공항이 다 해 봐야 1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업무가 얼마나 있어요, 이틀이면 하겠는데. 8개씩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해서 오전에 4개씩 해 가지고 16개 한번 계산 뽑아 봐요. 그러면 이틀이면 다 하지.
- 소위원장 부승찬** 시설국장님.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5구역은 45m입니다. 5구역이라고 하면 측면의 가운데 구간이 되는데요. 수평 구간이 45m입니다. 이거는 ICAO랑 FAA의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김태년 의원님하고 내신 것은 그 구역에서 저희가 만약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45m를 보장해 주는 완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90까지 올리고 300까지 올리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5가 나온 이유는 원래가 12였는데 45, 기존의 5구역에서 봤던 높이만큼은 무조건 보장은 해 주자라고 해서 45m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을 90까지 올리자, 300까지 올리자는 것은 저희랑은 좀 근거가 없고 위험에는 좀 더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법안 심사할 때로부터 한 석달 반 지났나요, 그렇지요? 그사이에 그냥 법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좀 따져 보자 하고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16개 공항에서 한번 다시 재분류를 해 보세요. 숫자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16개 몇 개 안 되잖아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공항 비행장별로 해서 제시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 적용해 보고 가부 여부를 따진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한기호 위원** 육군 항공하고 비상활주로도 같이 해야 돼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러면 전시 활용하는 비행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리고 차관님, 제가 한 가지……

구글과 관련된 것 구글 지도, 지금 위치 데이터를 요구하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사시설은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좌표로……

○**소위원장 부승찬** 블러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2+2 통상 협상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가 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일단 좌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형상도 유지하지만 그것을 좌표화할 수 있어야만 구글맵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좌표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보면 F-15 같은 경우에 지도에 보면 여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가 돼 있고 인도태평양사에서도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이것 구글 위치 기반 데이터가 나가면 우리는 다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군 시설, 보안 시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절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막아 주시기를……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군사시설 보호법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4항까지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보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으며, 다만 대통령령 위임 내용에 방산물자 보유승인의 요건, 절차, 폐기 등 처분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법안 소위에서는 엄격한 규정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수량 제한 및 관리 방안을 시행령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된 수정의견과 시행령안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그에 따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지난번에 법안 소위에서 입법 취지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시행령에 붙여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방산물자의 무단 보유나 반출 그다음에 또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관련하여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원님들께 설명을 일단 드렸고.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물자의 무단 생산이나 보유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이미 형별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같이 반영이 돼 있고.

그 외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닌 방산기술보호법에서 보다 엄격하게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ADD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방산업체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다시 방산업체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업체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처럼 조금 하다가 다시 손대서 넘겨줘서 개발해서 상품화 내지는 전력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ADD가 개발을 해서 원천 기술이나 이런 데이터가 국가 것인데 업체한테 개발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방산업체가 ADD와 같이 개발해서 시제품도 만들고 체계 생산도 들어가고 해서 군에 납품하고 한 서너 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기 위해서 때로는 대여도 해 주고 또 가지고 가서 같이 시험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방산 수출을 하려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방산업체가 그 기술에 대한 권리, 특히에 대한 권리를 100%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가 우선 그전에 지재권 관련해서 공동 개발이나 업체가 투자에 참여했을 때는 그 지재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이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전액 투자했을 때는 지재권은 정부가 가지는데 만약에 수출에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보호법 등에 의해서 기술 유출의 염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고 또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다 하고 그 상태 내에서는 기술을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그렇게 잘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집중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자체 생산·보유한 그 무기가, 하여튼 어떤 테러리스트 단체나 국가나 이런 곳이 위장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무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방지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선 시행령에서 그 업체가 보유한 목적에 맞는지, 적정 수량인지,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일단 하고 있고……

○허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던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방산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 유출을 비롯한 외부의 침입에 의한 방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영 위원 아니, 침입에 의해서 탈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위장 단체나 위장 국가가 하여튼 방산업체와 어떻게 어떤 로비의 과정이나 등등 이렇게 위장을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이 거의 탈취에 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그것이 테러리즘에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지금도 업체가 개발하는 시제품을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제품 만들어서 그 시제품이 최종적으로 군에 납품이 되거나 훈련용으로 쓰게 되는데 그 시제품도 기업들이 현재 저희 통제되는 시스템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 기억에 논의를 하면서 생산·보유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다 공감들을 하셨는데 허영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을 때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의문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승인 절차하고 그다음에 생산·보유하는 무기체계 무단 방출을 막기 위한 부분들을 법에다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 보는 순간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통제가 되겠구나’라고 할 정도의 시행령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허영 위원 아직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소위원장 부승찬 해결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려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종득 위원 시행령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행령에……

○한기호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동의하시고.

허영 위원님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행령에…… 위원님, 말씀 좀 더 드리……

○소위원장 부승찬 예, 시행령.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시행령안을 저희가 첨부했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기업들이 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이게 전력화에 미치는 영향성 그다음에 신청 수량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생산·보유를 어떻게 할지 그 구체적인 계획,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산기술 보호대책 등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뒤에 참고자료에 있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품질원에 관리·위탁을 맡기고 거기에 전문부서를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심지어 생산(개조·개발) 신청서와 폐기될 때 폐기신청서 양식까지 이미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좀 구체화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가 생산한 그런 무기를 마케팅 차원에서 해외에 전시하거나 이럴 때도 다 승인의 과정들을 거칠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당연히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허영 위원 숫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합니까,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보호대책 같은 것도 맞춰서 거기에 돼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승인할 계획이고 만약에……

○허영 위원 나중에 전시를 다 끝내고 다시 회수할 때나 이런 것들도 다 컨트롤 가능한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현재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허영 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들이 시행령 차원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그 조건하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기호 위원 정회하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빨리 마무리짓고…… 이제 2건이 남았으니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함정의 감항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제정법이고 법안 내용도 복잡하므로 공청회 실시 등 여론 수렴 후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유사한 형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용과 체계 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정 감항인증 시행의 전제조건 구비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항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안 시행 이전에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국제함정안전협회에서 제정한 NATO 기준인 잠수함 감항인증기준과 수상함 감항인증기준을 참고하여 별도의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NATO 기준을 바탕으로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함정안전협회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해군은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도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만 해경 함정은 이미 해경 임무 특성에 맞게 설계·건조되고 있고 함정 건조 시 선박 전문 감리사가 함정 성능에 대한 위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감항인증기준을 별도로 준용하면 사업 효율성 및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며 경찰청도 경찰청 운용 선박은 그 사용 목적상 군사용 함정과 규모와 용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동 준용 규정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제도와의 중복·상충 시 적용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함정 획득 시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험평가기준, 설계와의 합치성 여부를 판

단할 때 기준이 되는 품질보증 규격서와 감항인증기준의 내용 간 서로 유사·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 사업 자연, 업체 부담,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와 감항인증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거 뭐 심의할 필요 없네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제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2014년도 까지 원래 밖에서 선박을 감항인증 했었어요. 하다가 당시에 부조리가 계속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처벌도 받고 벌금도 물고 그래서 감항인증 하는 것을 기품원에서 일괄적으로 군함정은 하는 것으로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비역들이 먼저 있던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이것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실제로 기품원장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고. 기품원에서 능력이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함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밖에 있는 감항인증 기관에서 했을 경우, 기관이 아니고 업체에서 했을 경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가? 최소한도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안 쓰는 돈을 100억 이상을 왜 쓸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해외 수출하는 군함은 100% 외국 군이 쓰는 것이지 일반 회사에서 쓰는 군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군함들이 지금도 건조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데 기품원에서 확인해 가지고 보내는데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사실 저하고 계속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제가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하는 의원님을 바꾼 거지요, 한기호에서 다른 분으로.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분들이 군에서 하는 것을 밥그릇을 나눠 먹자고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자꾸 논의해 봐야 우리 위원들만 자꾸 추해져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고 몇 년도에 이걸 해서 부조리가 발생해 가지고 벌금 물고 처벌받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논의해 봐야…… 지금 기품원에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방사청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 입법 취지는 함정의 안전성을 더 높이고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수출에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법안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보안 기준, 그다음에 우리가 전투함이나 수출 함정, 전투함 외의 수출 함정이나 지원함 이런 기준을 따로따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조정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21대 때 법안도 가지고 있고 19대 때 것도 제가 법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때 법안들도 다 이것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함에 대해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군함의 안을 검수하려면, 군사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민간인한테 오픈돼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공청회를 하자고 한 거지 그냥 이것 법을 통과해서 가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유관 부서들이 부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또 해서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한기호 위원**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하나 더 있어요.

의사일정 제76항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6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은 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의 지휘 사항에 대한 건과 그다음에 국회 출입 금지의 건에 대해서만 협의가 된다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보고 사항에 있어서 ‘대통령’ 부분을 빼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허영 위원님과 박선원 위원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비상조치권에 대한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허영 위원**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NSC 회의를 하잖아요, 국방위원회가 주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NSC 회의록을 지금 국회에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NSC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이라고 명시를 하면 거기에 다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꼭 넣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이 주관한 비밀 회의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는 데 장관부터 계엄사령관까지 한 자료만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있으면 지시 사항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꼭 대통령실하고…… 민주당도 나중에 대통령 나오시고 다 해요.

○**허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야 되는……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혀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실제로 계엄 중일 때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계엄사령관을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좀 융통성 있게 상임위 위원장까지 좀 더 폭을 넓혀 주면 위원장이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자연스럽게 발언권을 갖지 않으시고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 취지가 국회 차원에서의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달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안 달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상되어지는 불편함과 또 어떤 유사 상황 속에서의 어떤 위험함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에 대한 국회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대통령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빼자, 어차피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보고하여야 한다’를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만들면 그러면 정말 전시 계엄 외에는 이번처럼 그런 비상계엄은 앞으로 없을 거다, 저도 향후 적어도 몇십 년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냥 대통령을 넣어 놓으면 되지요. 그때 민주당 정부 대통령이 될지 국민의힘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기호 위원** 민주당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 당연히. 과거에 됐고.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민주당 대통령이 어떤 분이 나오셔 가지고 ‘나 비상계엄 하겠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다 이거예요. 있어도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굳이 우리가 다, 입법부가 굳이 ‘대통령’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누가 여당이고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상황이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임종득 위원** 지금까지 참고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대통령이 주관해서 하는 안보와 관련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보고되어진 적이 없을 거예요. 아까 NSC를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내용이 보고됐느냐, 이야기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 각 부처의 장관이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라, 해라 하면서 그걸 유추해 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법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지시되고 했던 내용을 달라고 하는구나’ 하면 처음 있는 법률적인 규정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박선원 위원** 그래요? 아니, 이번에 현재 재판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부 대통령이 저거 해 가지고 제대로 다 보고하고 부서로 돼 있어서…… 다 돼 있잖아요, 절차에서.

○**허영 위원**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비상계엄, 그러니까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그전에 조항에서 국무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그것을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임종득 위원** 그런데도 민감한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허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 회의록이지요.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명시 안 해도 다 포함된다 이거야. 꼭 그걸 명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지, 제 얘기는. 명시 안 해도 다 포함된다니까요.

○**박선원 위원** 아니, 명시해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굳이 그 해당 기간에, 계엄 해제가 돼 버렸는데 대통령이 꼭 나올지……

○**한기호 위원** 어느 당의 대통령이든 대통령 고유 권한의 부분은 국회에서 명시해 가지고 회의하는 것을 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이것은 제가 중재를 좀 하면요 이게 ‘계엄 해제 이후 국회보고’에서 대통령이라고 딱 칭했거든요.

○**한기호 위원** 그것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보고하는 내용에.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 위의 것은 빼고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 그런데 밑에는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은 넣어도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한기호 위원** 그래도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위의 보고에는 제11조의3, 그러면 결국 국방부장관을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든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한기호 위원** 100% 된다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위의 대통령, 그러니까 제11조의3에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이 부분에서 ‘대통령’을 삭제하고……

○**허영 위원** 그것은 괜찮네.

○**소위원장 부승찬**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보고의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임종득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가. 제6조 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은 포함시키자,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박선원 위원** 보고 내용으로는 들어가되 보고의 주체로 굳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안 맞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는 이것은 취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허영 위원**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빼 주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출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국회 출입 금지보다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권한에 관련된 것……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는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출입 금지하는 건 그러니 ‘국회의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봉쇄보다는 국회 권한, 심의, 상임위가 열릴 수 있고 그러면 국회 권한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국회에 군인들도 출석시킬 수 있고……

○**한기호 위원** 당연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국회의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이런……

○박선원 위원 구체적으로 1번에다가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보장, 국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회의 권한 보장 차원에서 하면……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 이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니, 계엄하고 있는 지휘관도 부를 수 있고 경찰청장도 부를 수 있는 거지, 그걸 의장님한테 전부 가서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건 과하다 이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과하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국회의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해 버리면 이때는 그냥 완전히 프리패스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라는 문구를 ‘계엄사령관의’ 앞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당연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상임위원장까지 권한을 주는, 그렇게 하는 건……

○박선원 위원 아니, 그냥……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계엄법과 입법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장하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아니, 계엄법에서 국회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안 들어가, 너 그러니까 우리가 봐주는 줄 알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 뜻을 어떻게 담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계엄 시행 중에……

○소위원장 부승찬 상임위를 열 수가 있잖아요.

○박선원 위원 사실은 계엄 시행 중에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해·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시라 할지라도 전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장비나 국가동원 체제가 이렇게 관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문장이 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보장 차원’ 이게 좀 자신이 없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법으로 뭘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게 좀 어색하다는……

○임종득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해……

○임종득 위원 지금 계엄 상황에서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것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의 문제 인식은. 그러니까 괄호에 있는 ‘국회 출입 금지’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뭐를 위한 국회 출입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딱 줄여 주면 충돌이 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결에 관련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허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정된 규정을 넣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아니, 입법 취지에 맞는 국회 계엄 해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금지를 하려는 부분……

○**한기호 위원** 그건 앞부분에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잖아. 다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 시행 중’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계엄 시행 중이라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용인한 상태라고, 계엄을 오케이 한 상태야. 그리고 계엄을 오케이 한 상태에서……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아닌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선포를 했어.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지금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앞부분에 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국회 출입 금지 조항은 넣고.

그다음에 ‘계엄 시행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박선원 위원** 아니, 이대로 두면 뭐가 갑갑하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이대로 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임종득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북한의 남침, 전시 계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같이 맞서 싸우는 거니까 국회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고.

○**소위원장 부승찬** 양쪽의 의견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임종득 위원**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서로가 이해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박선원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왜냐하면 국민들도 보고 있고 이 계엄법과 관련돼서 국회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완을 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임종득 위원** 지금 이대로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비상계엄이 시행 중일 때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출입이 통제됩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하려면 행정적으로 국회의장이 계속 허가하는 행정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계엄이 길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그 사안 사안들을 와서 보고 받고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평시에도 이런 인력들은 사무처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것 패스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한기호 위원** 공무원인데 무슨.

○**허영 위원** 그게 패스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허가의 과정이잖아요. 패스 발급이 안 되면……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도 다 들어오잖아요. 똑같지.

○**임종득 위원** 지금도 다 되고 있는 건데.

○**한기호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국방부 누구 불렀다 그러면 오잖아요. 군인을 불렀다

그러면 오잖아. 그러면 계엄 상황에서 불렸을 때 못 오잖아. 이게 다르다는 거지.

○**허영 위원** 그것은 계엄 상황이니까 달라야지요.

○**한기호 위원** 아니,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지.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라져야 될 게 있다면, 입법 취지에 맞는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부분이 조건이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유지시켜 줘야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박선원 위원** 그 불편함이 뭐가 그렇게 중대하냐고요, 계엄법에서.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 계속 심사해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열 때 서류상으로라도 국회의장한테 다 보고되고 사무처에 등록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일단 상임위부터 간사 합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승인……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국회에 다 보고되고 기록되고, 서류 절차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회의장’ 빼고 ‘다만 국회가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포괄적이긴 하지요.

○**허영 위원** 아니, 의장은 해야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의장은 해야 되는데……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회기라든지 상임위원회 다 결국은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무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거지요.

○**한기호 위원** 의장님은 말 그대로 체어맨(chairman)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기관이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지.

제가 국방위원인데 여기서 경찰청장을 부른다, 수방사령관을 부른다 그러면 제가 의장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받지 않고 못 부르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풀어 주라니까 뭘 그렇게 다 끊어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결국은 전시가 됐건 뭐가 됐건 국회의 활동은 계속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종득 위원** 당연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무조건 출입을 금해 버리면 결국은 국회의장의 승인 외에는 혹은 국회의장의 요청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큰 틀은 유지하되, 국회의장이 하는 건 유지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권한 행사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그래도 뭔가……

○**한기호 위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보고를 받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의장실에서 출입을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나가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의장님이 한기호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렀다…… 왜 못 들어오게 해요, 의장님? 그건 안 맞다 이거야.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나도 입법기관인데, 의장님만 입법기관이야? 나도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임종득 위원** 우리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시다 보니까 북한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테러, 테러범 관련 부분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군인이, 경찰이 거기를 지나고 있어. 그런데 얘기 들어갔어. 들어가면 이것 위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재가 진짜 테러범인지 간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 가지고 뭐 하다가 너 왜 승인도 안 받고 절차도…… 너 범죄 있다, 너 3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물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제를 해 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허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 불허할 이유가 없지요.

○**임종득 위원** 허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도 실제로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허영 위원** 저는 다 들어왔는데, 저도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한기호 위원** 아니,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한한 사람들이.

○**허영 위원** 그건 내란 관련돼서……

○**한기호 위원** 아니, 나도 정당하게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의장님의 왜 제한을 하냐 이거야, 내 권한을. 나는 권한 준 적 없어, 의장한테.

○**허영 위원** 그런데 그런 권한은 있어요, 의장이 있어요.

○**한기호 위원** 아니지.

○**허영 위원**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있어요.

○**한기호 위원** 사실 이 계엄 상황이 후유증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서 보고를 받았지만 내가 그날은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 본인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한기호는 없나?

○**허영 위원** 내란 종사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아니,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만 양보를 하고 국회 권한 행사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허영 위원** 그렇게 올려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그래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박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법사위에 차관님이나 국방부에서 참석을 하실 거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원래 이 조문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동의했던 국방부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하나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가 돼서 위원님들 안이 반영될 수도 있고.

○**한기호 위원** 문구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계엄사령관의’ 이런 식으로.

○**박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한기호 위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소위원장 부승찬 금지지요,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거면.

○한기호 위원 그렇게 해도 좋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의견들이 있으면 또 법사위에 제시를 해 주고.

○박선원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봤을 때 침해를 막기 위해서가 나은지 보장 차원의 것이 나은지 그것은 선택할 수 있게……

○임종득 위원 그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분명히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상 여러 논의가 있을 거예요.

○한기호 위원 수방사, 특전사 그다음에 방첩사 여기 인원을 부르면 지금 출입증이 패스가 안 됩니다, 막아 놓아 가지고. 그래서 의장실에 확인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이제 방첩사 보고 받는데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한기호 위원 아니, 의장이 왜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 더 해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경험한 게 온당하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저희도 그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무처에 이야기를 해서.

○한기호 위원 아니,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나는.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무처에 한 번 더 항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아니, 사무총장한테까지 직접 확인했지요. 그래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위원장 부승찬 끝내시지요.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2항까지 6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정리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들의 대안 반영 여부 및 소위 계류 안건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느라고 진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윤상현 임종득 한기호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희

법무관리관 홍창식

기획관리관 김경욱

인력정책과장 문희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전력정책관 원종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공군본부

기지발전과장 양영준

병무청

차장 최규석

기획조정관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직무대리 배철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준식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국방예산과장 강미자